

일반손해보험 효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5. 12

김석영 · 김혜란

머 리 말

우리나라 손해보험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여 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9위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일반손해보험시장은 기업성보험과 연관된 산업의 저성장으로 현재 시장규모가 정체되어 있다.

일반손해보험 기업성보험은 특성상 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재보험 거래가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재보험회사와의 협력이 요구되어진다. 보험회사들이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요율을 산출하는 기본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대신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비중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고 있어 일반손해보험의 기본역량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현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시장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원은 일반손해보험 요율 산출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감독당국 및 일반손해보험회사가 취해야 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과제를 추진하였다. 손해보험회사의 요율산출능력 및 가격산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사요율이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협의요율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는 현 규정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손해보험회사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요율을 자유롭게 산출하고 사용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가 일반손해보험 활성화 논의와 관련하여 디딤돌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5년 12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강 호

■ 목차

요 약 / 1

I. 서론 / 14

1. 배경 및 목적 / 14
2. 선행연구 / 18
3. 보고서 구성 / 20

II. 일반손해보험과 언더라이팅 / 21

1. 일반손해보험 특징 / 21
2. 일반손해보험 언더라이팅 / 25

III. 일반손해보험요율 운영 / 30

1. 보험요율의 구성 및 형태 / 30
2. 보험요율 산출방법 / 31
3. 보험요율의 종류 및 장단점 / 33
4. 보험요율 사용 현황 / 40
5. 관련제도 및 규정 / 45
6. 국내업계 요율 및 가격산출 현황 / 48
7. 해외사례 / 52

IV. 개선방안 / 61

1. 일반손해보험 현황 및 문제점 / 61
2. 개선안 / 66
3. 기대효과 / 72

V. 결론 / 74

| 참고문헌 | / 77

| 부록 | / 78

■ 표 차례

〈표 I -1〉	건설수주액 증가율과 기술보험 성장률 비교 / 15
〈표 I -2〉	기업성보험 계약건당 보험료 및 평균요율 추이 / 15
〈표 III-1〉	보험료 산출방법비교 / 33
〈표 III-2〉	일반손해보험 요율 비교 / 36
〈표 III-3〉	요율비교 / 40
〈표 III-4〉	협의요율 사용계약 비중 / 41
〈표 III-5〉	연도별 협의요율 손해율 / 43
〈표 III-6〉	연도별 협의요율 비중 / 43
〈표 III-7〉	재보험 거래규모 / 44
〈표 III-8〉	과거 감독규정 / 45
〈표 III-9〉	신설 감독규정 / 46
〈표 III-10〉	규모별 요율 산출방법 / 49
〈표 III-11〉	해외 요율제도 비교 / 52
〈표 III-12〉	참고순율 자유화 이전과 이후 비교 / 55
〈표 III-13〉	미국의 보험요율규제 형태 / 57
〈표 III-14〉	Direct and Net Premium written Special Risk / 60

■ 그림 차례

- 〈그림 Ⅱ-1〉 All Risk 담보방식 및 Floater 방식 / 23
- 〈그림 Ⅱ-2〉 언더라이팅 절차 / 28
- 〈그림 Ⅲ-1〉 2013년 협의요율 손해율 및 비중 현황 / 42
- 〈그림 Ⅲ-2〉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와 보험회사의 관계 / 55

A Study of General Insurance Activation Plan

There are experience rate, reference rate, and rate from reinsurance in general Insurance. Characteristically commercial insurance is mainly using rates from reinsurance due to huge risk and difficulty to calculate the rates based on statistics.

Supervision system allows exemption of notification for rates from reinsurance. Insurance companies are willing to use rates from reinsurance due to the advantages of exemption of notification. In addition, the current provision asks company using experience rates, the reference rates, and rates from reinsurance in order. And when you use the experience rate other rates can not used later again. All these caused the companies neglected to risk assessment and pricing skills.

General insurance business requires a pricing capability with the ability to calculate rates by the risk assessment. However all companies do not need to cultivate the ability to calculate rates and pricing capabilities.

Small/midium-sized companies may have to raise the pricing capability rather since there is no ability to calculate the rate. Large size companies need to raise pricing capability and ability to calculate rates together. In order to achieve purposes four improvement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company should assess the risks themselves. Second, the company freely calculates the rates. Third, the used rates will be linked to financial soundness. Fourth, the internal control capabilities should be strengthened

The revision of the regulations is required for these purposes.

요약

I. 서론

- 우리나라 손해보험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여 보험료 기준으로 2013년 세계 9위 시장으로 성장함.
 - 2014년 말 자산규모가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었으며, 2014년 원수보험료는 76.6조 원에 달해 전년대비 8.3% 성장하였음.
-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전통적인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보험도 함께 판매하고 있음.
 - 2014년 장기손해보험 보험료가 44.4조 원으로 전체 보험료의 58.0%를 차지하고 있음.
 - 동년도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을 합친 연금보험 보험료는 10.5조 원으로 전체의 13.7%를 차지함.
 - 일반손해보험 보험료는 8.1조 원으로 전체 보험료의 10.6%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0.3%로 성장이 답보된 상태임.
- 일반손해보험 시장은 기업성보험과 연관된 산업의 저성장으로 시장규모 자체가 정체됨.
 - 최근에는 건설 및 해운 경기 침체에 따라 기술 및 해상보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기업성보험의 경쟁심화도 기업성보험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는 한 원인임.
 - 손해보험회사들이 장기손해보험을 주력종목으로 하는 성장전략을 취한 것도 기업성보험의 성장이 정체된 중요 원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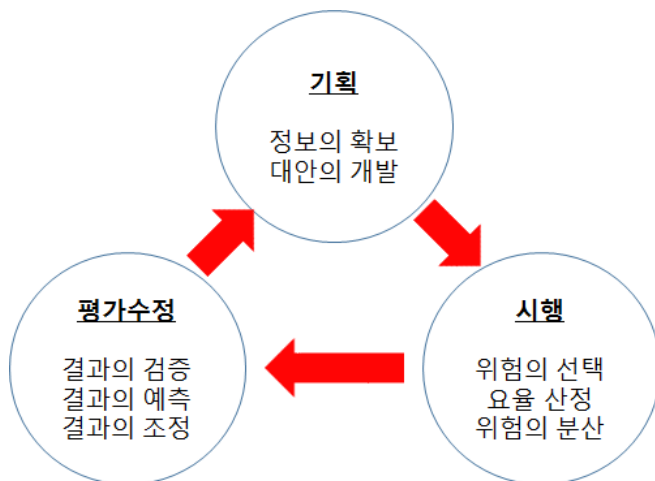
- 손해보험회사는 더 이상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보험 본업인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임.
 - 장기손해보험료 성장률은 2013년 5.6%, 2014년에는 6.1%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
 - 일반손해보험의 경과이익은 약 2조 7천억 원으로 장기손해보험 경과이익 6조 5천억 원의 42%정도의 수준임.
- 이에 본고에서는 일반손해보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손해보험회사의 위험 측정능력과 요율산출능력 강화 방안
 - 재보험 출재를 포함한 일반손해보험 효율적 운영 방안
 - 가격산출 및 운영 체계

II. 일반손해보험과 언더라이팅

- 기업성 손해보험은 계약담보들이 다양해서 서로 동질적이지 못함.
 - 손해보험회사는 공장,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한 보상조건이나 보상방법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Tailor made)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일반손해보험에서는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이 성립하지 않음.
 - 이용 가능한 경험통계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율 및 가격을 산출하는 언더라이팅능력이 중요함.
- 언더라이팅은 보험회사의 위험선택 업무를 말함.
 - 협의의 의미로는 보험회사의 위험선택업무 즉, 위험평가의 체계화된 기법을 의미함.

- 광의로는 보험계약의 모집과정부터 계약인수 및 처리, 손해사정 및 보험금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괄함.
- 언더라이팅은 마케팅, 손해사정, 그리고 사업손익관리 업무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 언더라이팅으로 결정된 보험료 수준은 마케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손해사정은 가입 전에 이루어진 언더라이팅 작업 즉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짐.
 - 정확한 위험평가와 재보험사로의 위험전가는 회사의 손익 안정을 위해 필수적임.
- 언더라이팅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더라이팅 계획수립, 시행, 평가 및 수정의 3단계에 의한 순환관리가 필요함.

〈요약 그림 1〉 언더라이팅 절차



자료: 삼성화재(2005), 『손해보험개론』.

Ⅲ. 일반손해보험요율 운영

- 보험요율 산출방법에는 판단법, 손해율법, 그리고 순보험료법이 있음.
 - 보험회사는 때에 따라서 각 방법들을 혼용하여서 사용하고 있음.
- 판단법이란 언더라이터가 요율을 결정하는 방법임.
 - 보험요율 산출방법 중 가장 오래된 방법임.
 -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대략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고 순전히 요율산정자, 즉 언더라이터의 경험과 판단에 근거를 둔 것임.
- 손해율법은 기존의 요율에 경험 손해율을 반영하여 새롭게 요율을 만드는 방법임.
 - 새롭게 요율을 산출하는 것이 아님.
 - 언더라이터의 경험적 판단에 의하기보다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요율산출을 하는 것임.
 - 과거 경험통계자료가 있는 경우 자주 쓰이는 방법임.
- 순보험료법은 손해율법과 달리 구요율을 조정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것임.
 - 과거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대수의 법칙에 의해 사고 빈도를 구함.
 - 과거의 사고발생빈도를 기초로 그 경향, 장래의 사회경제 환경을 예측함.
 - 기타 여러 가지 사고발생요인의 예측으로 장래 사고발생빈도를 예측함.
- 일반손해보험의 요율은 크게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 그리고 협의요율로 구분함.

- 자사요율은 보험회사가 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하는 것임.
 - 자사요율 산출대상 보험종목은 경험실적이 종목별 신뢰도 기준 30%를 충족하는 담보임.
- 참조순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이 산출하여 보험업계에 제공하는 요율을 말함.
 - 참조순보험요율은 자사경험율을 산출하지 못하는 회사들을 위하여 요율이 제공됨.
 - 한편으로는 협의요율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사용됨.
- 협의요율은 손해보험회사가 재보험사와 협의를 통하여 산출한 요율임.
 - 협의요율은 거대위험 또는 통계가 부족한 위험을 담보하는 기업성보험계약에 사용됨.
 - 경험부족과 충분한 자본력이 없는 상황에서 협의요율의 사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요약 표 1〉 일반손해보험 요율 비교

구분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	협의요율
산출주체	원보험회사	보험개발원	원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요율기초	회사 경험통계 국내외통계자료 참조순요율수정	업계가 제공한 과거 경험통계	경험실적, 개별위험특성 시장담보력 등재보험시장상황
기초서류	최초 인가 시 신고	신고 없음 보험개발원산출	신고 없음
적용대상	손해율이 검증된 중소형 물건		대형물건 및 신상품

- 손해보험회사의 일반손해보험(보증, 상해 제외) 협의요율 사용계약 비중은 지난 10년간(FY'03~FY'12)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요약 표 2〉 협의요율 사용계약 비중

연도	FY'03	FY'05	FY'07	FY'09	FY'12
비중	64.8%	66.5%	66.7%	72.4%	76.3%

자료: 금융감독원 보고서(2014).

- 재보험자 협의요율은 주로 큰 계약에 사용되고 있으며 손해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기업성 보험계약은 특성상 건수기준 비중보다 보험료기준 비중이 훨씬 높음.

-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하나, 협의요율은 일반손해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요율기재사항에서 면제대상이었음.

- 과거에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7-74조(일반손해보험의 필수기재사항 면제)에서 일반손해보험 기업성보험 영역을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은 보험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함.

- 현재는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에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현재 신고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과거 재보험자 협의요율에 해당함.

- 신설 감독규정 제7-48조(공통사항 신고기준)에서는 과거 협의요율 적용대상 보험에 대해 신고를 면제하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위험조사를 하지는 않으며, 대형물건이거나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간사사인 경우에 한해서 위험조사를 함.

- 소형 또는 중소형물건의 경우에는 통계가 어느 정도 집적되고 개별 물건들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위험조사보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함.

- 그러나 물건이 대형화될수록 동질성이 떨어져 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위험조사를 통해서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요율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

- 위험조사에 의한 요율산출보다는 계약의 성공여부가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 회사는 꼭 계약을 체결해야겠다고 판단하면 위험조사에 상관없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함.
 - 보험회사의 담보능력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면 보험회사가 제시한 가격을 받아 주는 재보험회사를 찾아서 협의요율을 받아옴.
 - 회사의 위험분석을 기초로 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면 회사의 보유능력을 검토하여 능력 이상의 부분은 재보험회사에 넘기는 방법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함.

- 현재 업계 언더라이팅 현황은 요율산출능력을 중시하기보다는 가격산출능력을 중시하는 편임.
 - 시장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지 회사가 위험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임.

- 협의요율은 자사요율이나 참조순보험요율과 달리 자유롭게 그 수준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 시 회사가 원하는 수준의 협의요율을 제공하는 재보험회사를 찾게 됨.
 - 손해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시장 환경하에서는 재보험회사의 요율에 의존하려 하고 자체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가격에 체계적으로 반영시키는 언더라이팅 프로세스를 갖출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음.

- 현재 보험회사는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 그리고 협의요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현행 요율운영체제는 자사요율이 최우선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이 참조순보험요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순서로 되어 있음.
 - 따라서 협의요율을 사용하다가 참조순보험요율이나 자사요율로 변경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참조순보험요율이나 자사요율을 사용하여야만 함.

- 외국의 경우 기업정보험의 보험요율은 시장원리에 의해 주로 결정됨.
 - 보험회사는 시장경쟁을 고려하여 자사요율 또는 재보사와 협의한 요율 중 경쟁력을 가지는 요율을 선택하여 사용함.

- 일본의 경우 기업용 화재보험요율은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가 산출한 요율을 참조하여 산출한 순율에 사업비율 및 이익률을 반영하여 결정됨.
 - 요율을 산출할 때에는 요율의 3원칙 즉 합리성, 타당성, 공평성이 지켜져야 하며 이는 요율심사의 기준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은 재보험자 요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손해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산출한 요율을 자사의 요율로 인가 신청한 후 사용함.

- 미국 손해보험회사는 독자적인 요율체계를 운영하면서 주 당국에 필요 시 신고 또는 인가를 받으면서 사용하고 있으며 재보험자의 요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는 상황임.
 - 최근에는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계약자가 가입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를 면제시키는 법(ECPs: Exempt Commercial Policyholders)을 채택하는 주가 증가하고 있음.
 - 뉴욕주에서는 Free Trade Zone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여 Special Risk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음.

IV. 개선방안

- 대형사는 규모와 요율산출 및 가격결정능력 측면에서 중소형사와 차별화됨.
 - 대형사는 계열사 물건 수주와 브랜드 파워 등으로 경험자료 축적에 유리함.
 - 중소형사는 충분한 경험자료 축적에 한계가 있어 자사요율 산출에 어려움.

- 중소형사는 거대 물건의 위험을 평가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재보험회사와 협상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 중소형사는 위험평가를 통한 요율산출능력을 적극적으로 키울 요인이 적음.
 -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하는 요율산출능력이 시급한 과제가 아니며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가격산출능력이 필요함.

- 대형사의 경우에는 재보험사와 협상 시 주도적으로 협상이 가능함.
 - 주도적 요율협상을 위해 요율산출능력 배양이 필요함.
 - 요율산출능력 배양은 향후 해외진출에 유리함.

- 한편 손해보험회사가 자사요율을 사용할 경우 다시 참조요율이나 협의요율 사용이 불가함.
 - 요율산출능력을 키워서 자사요율을 적극적으로 산출할 유인이 감소함.

- 시장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자사요율, 참조요율, 그리고 협의요율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시장의 급격한 가격변동 억제 효과가 있음.
 - 자사요율을 사용하지 않고 협의요율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협의요율은 재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가격이 유지됨.
 - 효율적인 시장경쟁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됨.

- 손해보험회사는 협의요율의 유연성과 요율선택 비자율성으로 협의요율에 의존하게 됨.
 - 따라서 요율산출능력을 키울 유인이 적으며 오히려 가격산출능력에 치중함.
- 일반손해보험산업이 활성화되고 언더라이팅 능력향상을 위해 요율산출체계 및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함.
 - 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음.
- 요율산출체계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은 자립성 강화, 자율성 강화, 재무건전성 연계, 내부통제역량 강화로 이루어져야 함.
- 자립성은 일반손해보험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계약대상의 위험을 평가하는데 재보험사에 의존하지 않고 손해보험회사의 역량에 기초해서 위험을 평가하는 것임.
- 자립성 강화를 위해 감독규정 7-48조 2항 삭제가 필요함.
 - 재보험회사와 협의할 수 있는 것을 미리 규정하고 신고까지 면제함으로써 협의요율의 사용을 더욱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회사들의 자립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회사가 필요할 때 재보험회사의 협의요율이 자유롭게 해야 함.
- 자율성이란 회사가 산출한 위험평가를 기초로 요율을 자유롭게 산출하는 것임.
 -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요율을 산출하든지 아니면 언더라이터의 경험과 개인적 판단에 기초해서 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 위험평가를 기초한 가격과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임.

- 자율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에서 일반손해보험 요율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
 - 자사요율, 참조율, 그리고 협의요율 순서로 정해져 있는 요율의 적용순서를 폐지해야 함.
 - 감독규정에서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임.

- 일반손해보험회사가 사용하는 요율을 재무건전성에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 요율의 자율성 또는 자립성 강화로 회사가 재보험사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음.
 - 자사경험요율, 참조순보험요율, 판단요율, 협의요율에 대한 요구자본 산출 계수를 차별화하여 재무건전성에 연계시킴.

- 내부통제 역량이란 회사가 위험평가 및 요율과 가격을 산출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하는 역량임.
 - 언더라이터 또는 평가시점에 따라 동일한 혹은 비슷한 물건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평가와 이에 따른 가격설정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감독당국은 내부기준의 기본 형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업계와 상의해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내부기준 표준안(가칭)을 제공하고 보험 회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각사는 감독당국에 회사 내부기준안의 표준안 부합여부를 인가받고,
 - 감독당국은 정기적으로 요율산출 및 운영체계의 내부기준 부합여부를 검사하면 됨.

- 이로써 보험회사들은 자사요율 산출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재무건전성 검토로 무분별한 협의요율 사용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됨.
 - 판단요율 인정으로 언더라이터의 역량을 중시하여 중소형물건에 대해서도 개별특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됨.
 - 자사경험요율, 참조순보험요율, 그리고 협의요율 모두를 검토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져 가격인하가 예상됨.
- 중소형 보험회사는 모든 업종을 다루는 일반손해보험회사에서 특정 영역에 집중 한 일반손해보험회사로 전환이 필요함.
 - 자본력과 시장경쟁으로 전문업종 중심의 일반손해보험회사로 전환되어 전문성 강화

V. 결론

- 감독당국은 일반손해보험회사가 협의요율 사용을 줄이는 대신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요율을 산출하는 요율산출역량을 키울 것을 기대하였음.
 - 협의요율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감독당국은 자사요율 산출을 권장하고 참조순 보험요율을 확대하려고 노력함.
 - 중소형 회사들은 현실적으로 요율산출능력을 강화하여 자사요율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움.
- 현재 요율산출체계와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요율사용에 자율성이 없다는 것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반손해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율산출체계

및 운영체계의 개선방향은 회사의 자립성, 자율성, 내부통제역량 강화 그리고 효율산출 및 운영의 재무건전성 연계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은 각사의 역량에 맞추어서 위험평가를 통한 효율산출능력 또는 가격산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고 회사의 성장을 도모할 것임.

I. 서론

1.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손해보험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여 보험료 기준으로 2013년 세계 9위¹⁾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2014년 말 자산규모가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었으며, 2014년 원수보험료는 76.6조 원에 달해 전년대비 8.3% 성장하였다.²⁾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는 전통적인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보험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보험종목별로 살펴보면 2014년 장기손해보험 보험료가 44.4조 원으로 전체 보험료의 5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을 합친 연금보험 보험료는 10.5조 원으로 전체의 13.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연금보험은 전년대비 34.2% 성장하여 손해보험 성장을 주도하였다. 손해보험산업의 최근 성장은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성장보다는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보험의 성장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반면, 손해보험회사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손해보험 보험료는 8.1조 원으로 전체 보험료의 10.6%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0.3%로 성장이 답보된 상태이다. 이러한 답보상태는 2014년 한 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13년에도 전년대비 1.5% 성장에 그쳐 전체 보험료 성장률 4.2%³⁾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일반손해보험 시장이 정체된 것은 기업성보험과 연관된 산업의 저성장에 기인한 것이다. 최근에는 건설 및 해운 경기 침체에 따라 기술 및 해상보험 규모가 지속적인

1) Sigma No 3/2014, Swiss Re.

2) 보험연구원(2015), 『보험동향』, 2015년 봄호.

3) 보험연구원(2014), 『보험동향』, 2014년 봄호.

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산업의 수주액은 2009년 109.1조 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75.7조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술보험 원수보험료도 2009년 3,927억 원에서 2013년 2,75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기업성보험의 경쟁심화도 기업성보험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는 한 원인이다. 계약건수 증가로 보험료 총액은 증가하나 요율 경쟁으로 인하여 계약건당 보험료 및 평균요율은 하락 추세에 있다. 최근 계약건당 보험료 및 평균요율은 연평균 -3.7%, -6.3%씩 각각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표 I-1〉 건설수주액 증가율과 기술보험 성장률 비교

(단위: 백만 톤,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설 산업	수주액	109.1조	89.8조	95.3조	89.4조	75.7조
	(성장률)	(△5.00%)	(△17.7%)	6.10%	(△6.2%)	(△15.3%)
기술 보험	원수보험료	3,927억	3,865억	3,529억	3,255억	2,750억
	(성장률)	(△49.60%)	(△1.6%)	(△8.7%)	(△7.8%)	(△15.5%)

자료: 통계청;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털서비스.

〈표 I-2〉 기업성보험 계약건당 보험료 및 평균요율 추이

(단위: 천,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보험료	3조 3,538억	3조 4,812억	3조 7,629억	4조 353억	4조 2,326억
계약건수	3,628,093	4,264,970	4,722,561	5,134,072	5,326,782
건당 보험료	92.4만	81.6만	79.7만	78.6만	79.4만
평균요율	0.09%	0.07%	0.07%	0.06%	0.07%

주: 평균요율 = 보험료 / 가입금액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털서비스.

손해보험회사들이 장기손해보험을 주력종목으로 하는 성장전략을 취한 것도 기업성보험의 성장이 정제된 중요한 원인이다. 손해보험회사의 장기손해보험은 생명보험과 시장이 겹치지만 지난 몇 년간 두 자리 수의 고성장을 이루었다. 2009년에 전년

대비 23.4%의 보험료 성장률⁴⁾을 기록한 후 2010년 21.2%, 2011년 21.2%, 2012년 17.7%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보험료 성장률은 2013년 5.6%, 2014년에는 6.1%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저성장과 저금리 등으로 과거와 같은 두 자리 수의 성장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회사는 더 이상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보험 본업인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에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되었다.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이 FY2014년에 85.2%인 반면 일반손해보험의 경과손해율⁵⁾은 자동차보험 88.5%, 화재보험 55.4%, 해상보험 59.8%, 보증보험 68.5%, 그리고 특종보험 68.5%로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는 장기보험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⁶⁾ 일반손해보험의 경과이익, 즉 경과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을 제외한 금액은 약 2조 7천억 원으로 장기손해보험 경과이익 6조 5천억 원의 42%에 이른다. 일반손해보험이 보험료 규모에 비해서 매우 높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손해보험은 장기보험 또는 실손보험과 달리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그래서 공장, 선박, 건물 등 다양한 재물에 대해 화재, 홍수 등 다양한 사고를 보상해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물들의 개별 위험을 측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요율 및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 위험의 측정능력, 요율산출능력, 그리고 가격산출능력은 일반손해보험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손해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언더라이팅능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언더라이팅능력은 하루 아침에 쉽게 습득할 수 없는 것으로 보험회사들의 오랜 경험과 노력에 의해서만이 습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은 일반손해보험 영업을 처음 수행할 때는 이러한 능력을 갖춘 재보험회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특히 보험가입금액이 보험회사의 자본능력을 초과할 때는 이 초과 부분을 재보험회사에 출재해야하기 때문에 재보험회사의 도움이 더욱 요구된다.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능력 한계와 자본 부족

4)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매년 봄호.

5) 경과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6) 보험연구원(2015), 『보험동향』, 2015년 봄호.

을 재보험회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재보험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산출되는 요율을 협의요율⁷⁾이라고 한다.

현재 손해보험회사가 사용하는 요율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하는 참조순보험요율, 자사경험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자사요율, 그리고 협의요율이 있다. 손해보험회사는 처음에는 경험 및 언더라이팅능력 부족으로 협의요율과 참조순보험요율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면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경험이 축적되고 언더라이팅능력이 향상되면 자사경험을 바탕으로 자사요율을 산출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협의요율 사용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반손해보험(보증, 상해 제외)의 협의요율 사용계약 비중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FY'03년 협의요율 사용계약 비중은 64.8%였으나, FY'12년에는 76.3%로 상승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협의요율 사용 비중은 감소해야 하나 오히려 협의요율 사용 비중은 증가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은 핵심경쟁력인 보험요율 산출 및 위험인수 결정을 재보험자에게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협의요율 계약이 개인사업자·단체계약자 등으로 확대될 움직임⁸⁾이 있어, 협의요율 특징인 보험요율의 불안정성, 즉 재보험회사가 협의요율의 제시를 거부할 경우 원수보험회사가 요율을 산출할 수 없어 일반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손해보험회사들은 기업성보험 계약 특징상 재보험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재보험 출재를 전제로 요율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분은 재보험회사와의 협의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자사경험율을 가지고 협의하는 대형사는 재보험회사의 신뢰도가 높아 재보험출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협의요율 대신 자사요율을 사용할

7) 과거에는 재보험회사로부터 구득한다는 뜻에서 구득요율이라고 하였으나 단순히 구득하기 보다는 상호협의를 통하여 요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현재는 협의요율이라고 함.

8) 손해보험회사는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성보험계약에 대한 기준을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있는 가계성보험의 정의(가계성보험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으로 규정)를 준용하여 가계성보험 이외의 보험계약으로 운영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및 단체보험계약자에게도 협의요율을 사용한 재산종합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등을 무분별하게 판매함.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소형사는 대형사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져 재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협의요율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손해보험요율은 언더라이팅능력의 유무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의 자본능력에 따른 재보험 출재와도 깊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에게 협의요율 사용을 자제하고 자사요율의 사용을 강요할 수도 없고, 언더라이팅능력 배양을 무시하고 재보험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일반손해보험 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능력을 강화하면서 자사요율과 재보험회사 협의요율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율산출 및 운영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율산출 및 운영 체계를 통하여 손해보험회사는 위험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하는 능력과 가격산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언더라이팅능력 향상은 손해보험회사의 핵심역량 향상을 의미하며 향후 해외진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장경쟁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일반손해보험 요율산출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이루어져 왔다. 국외 연구 중 Emilio C. Venezian(1985)은 보험요율 산출에 대해 연구하였고, 주로 과거의 비용과 손해율의 회귀분석을 통해서 미래 요율을 산출하며 이는 언더라이팅 손익에서 일정한 패턴을 만들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미래의 요율산출 시 사용되는 방법론의 특징에 따라 패턴의 특성이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Scott E Harrington(1987)은 규제가 자동차보험 요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1976~81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여 이 기간 동안 규제가 요율을 낮추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요율사용에 있어서 재보험자 협의요율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협의요율 사용과 관련된 연구는 찾기가 어려웠다.

국내의 일반손해보험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가격평가방법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서영길(1998)은 일반손해보험상품의 가격산정과 관련해서 가격산정의 원칙과 검토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규연(1999)은 손해보험의 가격결정 시 사용되는 모형들을 접근방식에 따라 통계모형, 수리모형, 그리고 재무모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손해보험의 가격이 과거 통제되었다가 2001년 전면 자유화되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이희춘(2001)은 가격자유화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응방안으로 전사통계에 의한 참조위험률 기능 강화와 자사요율 산출능력의 배양을 제시하였다. 정중영(2005)은 국내손해보험시장의 성장 동인과 수익구조를 분석하였다. 특히 언더라이팅 부문에서 체계적·과학적인 언더라이팅 및 전문 언더라이터 부족으로 자체요율 산출능력이 떨어지며, 보험료 산출을 위한 고객·계약 및 사고사항 정보의 DB관리 미흡 등 기반이 약한 회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언더라이팅 부분에서는 요율산출능력 극대화과 보유능력 확대의 선순환을 달성하고 자사요율 산출능력 확보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협의요율 사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려우며, 감독당국과 업계가 협력하여 작업한 결과는 공식적으로 공표된 것이 없으나 일부 내용은 업계에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본문에서 내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소개하기로 하겠다.

본 보고서에서 논하고자 하는 가격산출 및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찾을 수 없었다. 선행연구들은 살펴본 바와 같이 요율산출 방법 또는 요율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일반손해보험 활성화 방안으로써 가격산출체계 및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고 판단된다.

3. 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는 I 장~V 장으로 구성된다. II 장에서는 일반손해보험의 특징과 언더라이팅 프로세스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일반손해보험 및 언더라이팅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III 장에서는 요율산출 그리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요율의 종류들과 각 요율들의 장단점에 관해서 논할 것이며, 국내업계에서는 요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해외에서 일반손해보험 요율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IV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문제점과 해외사례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일반손해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V 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정리할 것이다.

Ⅱ. 일반손해보험과 언더라이팅

1. 일반손해보험 특징

일반손해보험은 상해, 질병, 배상책임, 화재 등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담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약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 발생 시 발생한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보험금)받게 되는 경제적 준비제도이다.

일반손해보험을 사업형태로 분류할 경우 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⁹⁾ 화재보험은 가장 오래된 보험 분야 중의 하나이며, 화재보험 약관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보험약관의 모태가 되었다. 화재보험을 다시 주택화재보험, 산림화재보험, 그리고 일반화재보험으로 분류한다.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박보험, 적하보험, 운송보험으로 분류한다. 특종보험은 비교적 최근에 창안된 보험제도로 과거의 전통적인 보험제도인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과 구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종보험은 대체로 상해보험, 항공보험, 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동산종합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건설공사보험, 기관기계보험, 조립보험, 원자력보험,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지급계약보증보험, 동물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

9) 가입대상에 따라서 분류할 경우 재물에 관한 보험과 책임에 관한 보험 그리고 이익에 관한 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음. 재물에 관한 보험은 건물, 선박, 화물 등 물건에 관한 보험으로 화재보험, 도난보험, 동산종합보험, 기계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 등으로 세분류할 수 있음. 책임에 관한 보험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중 배상책임 담보 보험 등으로 세분류할 수 있음. 이익에 관한 보험은 보험사고로 기인된 영업장의 가동중지로 인하여 상실된 영업이익에 관한 보험이 있음.

으로 통용되고 있다.

일반손해보험을 보험료 납입주체에 따라서 분류할 경우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계보험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계약을 말하며 기업보험은 보험료를 기업이나 단체가 부담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현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특종보험의 종합보험에서 가계성보험은 개인의 재물손해, 신체손해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중 두 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성보험은 기업의 재물손해, 손해배상책임 및 구성원의 신체손해 보장 중 두 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계성 손해보험 계약자는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능력이 약한 개인이므로 기업성 손해보험 보험계약자보다는 감독당국으로부터 보호를 더 받아야 한다. 가계성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비교적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등급화에 따른 가격차별화가 가능하여 개별 요율산정체제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개별 물건에 대한 언더라이팅보다는 등급별 언더라이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손해보험회사는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 상품과 같이 획일화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계성보험 계약자는 상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매하기 어려우며 분쟁 발생 시 가계성보험 계약자가 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적으로 다투기 어렵다. 그러므로 감독당국은 생명보험 계약자처럼 가계성보험 계약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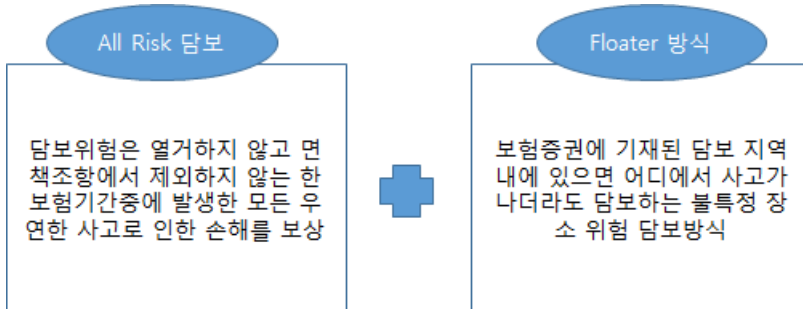
반면, 기업성 손해보험은 계약담보들이 동질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가계성보험처럼 등급별로 언더라이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별 물건에 대해서 위험을 각각 평가를 해서 요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성 손해보험 계약자는 가계성 손해보험 계약자와 달리 보험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보험계약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다. 개별위험과 보상범위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보호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감독당국은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품의 요율, 보장범위 등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가계성 보험 등을 구매하는 일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대처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업, 중앙·지방정부 기관, 각

종 단체들은 보험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에 감독당국이 굳이 보호할 필요는 없다. 감독당국의 보호측면에서 일반손해보험의 기업성보험은 생명보험이나 가계성보험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 규제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손해보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상품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동산종합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모든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All Risk 담보방식의 보험이다. 그리고 보관 중, 사용 중, 운송 중을 묻지 아니하고 증권상 담보지역 내이면 어떠한 장소에서 생긴 손해도 담보하는 Floater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동산종합보험은 불특정장소위험담보가 원칙이나 특정 장소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만을 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림 II-1〉 All Risk 담보방식 및 Floater 방식



패키지보험의 경우에는 다양한 보험수요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보장한다. 예를 들면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제철공장, 기계공장 같은 대단위 시설은 화재위험 외에도 풍수재/도난과 기계장치의 고장위험, 기업휴지로 인한 손실위험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위험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패키지보험이다. 공장,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한 보상조건이나 보상방법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Tailor made) 방식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다.

이러한 보험들은 계약자의 특성에 맞추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다. 즉, 개별 계약자별로 다루는 위험의 종류 및 특성이 다르다. 그러나 이는 동산종합보험과 패키지보험에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닌 일반손해보험의 기업성보험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이다.

따라서 일반손해보험에서는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을 적용하기 어렵다. 대수의 법칙이란 표본의 평균이 표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모집단의 평균에 수렴해 가는 규칙을 말한다. 관찰횟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 평균을 추정하는데 그만큼 위험성이 적어진다. 그러나 표본 크기가 몇 개 되지 않는다면 이 표본으로부터 산출된 평균이 실제 평균과 비슷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손해보험은 동일한 보장담보에 대한 대상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에 따라 발생요율을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기업성 손해보험의 통계량은 산업전체로도 많지 않으며, 특정 보험회사의 통계량은 더욱더 적은 것이 현실이다. 즉, 다양한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성 보험은 위험의 개별화 경향이 강해서 충분한 통계를 확보하기 어려워 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반손해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요율산출과 관련해서 동일한 규정을 생명보험과 일반손해보험에 같이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손해보험 중 기업성보험에서는 먼저 이용 가능한 경험통계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을 받았을 때 보험대상의 위험을 조사하여야 한다. 보험대상만이 가지는 위험이 무엇이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생기는 손실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수를 할 것인지, 인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설정된 조건하에서 보험요율을 산출하여야 하며,¹¹⁾ 재보험의 필요 여부 및 재보험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보험가격도 결정하여야 한다.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요율에

10) 관련규정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하겠음.

11) 보험요율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부록〉에서 설명함.

근거해서 가격을 산출해서는 안 되고, 가격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업무가 필요한 이유는 개별계약들이 동질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위험을 평가하고, 요율을 결정하는 이러한 모든 업무들은 일반손해보험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언더라이팅(Underwriting)¹²⁾¹³⁾이라고 한다.

2. 일반손해보험 언더라이팅¹⁴⁾

가. 언더라이팅 개론

생명보험에서는 사망,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을 담보로 보험상품을 만드는데 이때 전체 보험계약자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보험료를 계산한다. 여기서 동질적인 집단이란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개개인의 사고 발생확률은 평균 사고발생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의미한다.¹⁵⁾ 더 나아가서 대수의 법칙에 따라 계약건수가 많아질수록 계약자들의 평균은 전체의 평균값에 수렴해 가기 때문에 개별 계약자의 발생확률과 보험요율의 오차가 줄어들게 된다.¹⁶⁾

그러나 손해보험은 개별 가입대상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이 건물, 가재도구, 집기비품, 원·부자재, 반·완제품, 기계 등 매우 다양하다. 건물의 경우 개별 건물들의 크기와 건축연도, 구

12) 언더라이팅을 우리말 표현으로 위험인수라고 하기도 하지만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언더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언더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13) 언더라이팅은 과거의 영국보험시장에서의 관행으로 보험자가 보험인수에 관한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가리킨 데서 유래한 용어임(박상범 2006, p. 217).

14) ‘삼성화재(2005), 『손해보험개론』’을 인용 및 참조하여 작성되었음.

15) 다른 표현으로 Process Risk가 크지 않음을 의미함.

16) 다른 표현으로 Parametric Risk가 줄어듦을 의미함.

조 등도 다르다. 그러므로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생명보험 계약건수만큼의 계약건수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arametric Risk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험요소를 가지는 물건으로 간주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산출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하는 보험료는 개별건물의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위험이 낮은 건물 소유자는 과도한 보험료로 보험가입을 꺼리게 될 것이며, 반면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소유자는 보험가입을 선호하여 결국 보험시장은 레몬시장(lemon market)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 바로 언더라이팅이다.

언더라이팅이란 보험회사의 위험선택 업무를 말한다. 일반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청구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무조건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보험을 가입시킨다. 보험회사가 위험을 선택하는 것은 손해발생위험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에 가입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가 언더라이팅이다. 즉, 언더라이팅은 소비자 역선택 방지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수익성 확보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고유업무이다.

오늘날 이 언더라이팅이란 용어는 협의로는 보험회사의 위험선택업무 즉, 위험평가의 체계화된 기법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보험계약의 모집과정부터 계약인수 및 처리, 손해사정 및 보험금지급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괄한다. 언더라이팅은 위험판단을 통한 인수여부의 결정, 인수조건 및 보험요율 산정, 보유금액 결정 및 재보험 방법 등 보험계약 인수와 관련된 광범위한 업무를 망라하고 있어 보험 사업의 핵심업무에 해당하며, 언더라이팅 결과는 직접적으로 경영 성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언더라이팅은 보험의 일부가 아니라 보험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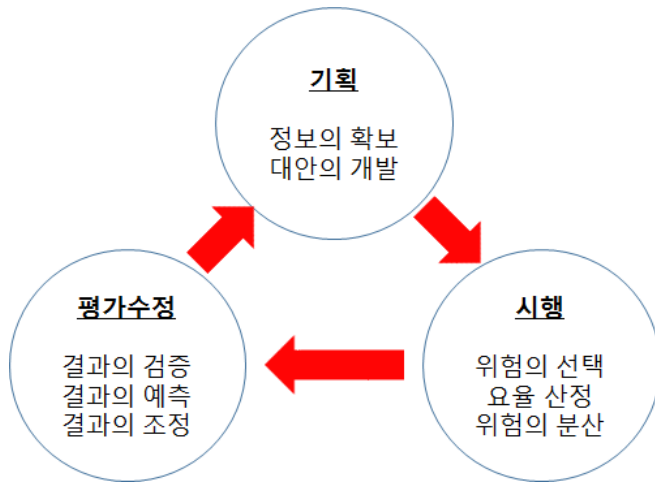
그리고 언더라이팅은 마케팅, 손해사정, 그리고 사업손익관리 업무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보험계약의 보험료 수준은 언더라이팅의 위험평가와 요율 산정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결정된 보험료 수준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마케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으나 높은 경우에는 마케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언더라이팅은 마케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

생하였을 때 손해를 평가하는데 이를 손해사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손해사정은 가입 전에 이루어진 언더라이팅 작업 즉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은 보험계약의 시작과 끝과 같은 존재로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언더라이팅은 손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업성보험의 특징상 가입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확한 위험평가와 재보험회사로의 위험전가는 회사의 손익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언더라이팅을 잘못하여 위험도가 높은 위험을 편중하여 인수할 경우 빈번한 보험사고로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반면, 손해율에 급급한 나머지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의사를 지나치게 회피하는 경우에는 보험소비자로부터 불신을 받아 결과적으로 적정한 매출을 통한 손익창출에 문제가 발생하여 보험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나. 언더라이팅 절차

언더라이팅은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더라이팅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및 수정의 3단계에 의한 순환관리로 이루어진다. 언더라이팅 계획수립은 언더라이팅의 출발점으로써 적절한 정보를 확보하고, 보험인수지침 및 보험요율서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대비하는 것이다. 언더라이팅의 핵심요소인 위험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이고 정확한 위험관련 정보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계약인수 조건 및 보험요율 등급 등을 작성한다. 언더라이팅의 시행은 위험선택, 요율산정, 위험보유와 분산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특히 위험선택 단계에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청약서 심사나 현장심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사자료는 보험자의 위험 선택 시 귀중한 자료가 된다. 언더라이팅 평가 및 수정에서는 언더라이팅의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단계의 청약서, 조사서 및 보험요율서 등을 수정한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언더라이팅 매뉴얼 등을 신속하게 수정·보완하여 다음 계약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II-2〉 언더라이팅 절차



자료: 삼성화재(2005), 『손해보험개론』.

언더라이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보험의 목적, 즉 청약된 보험물건을 보험자가 인수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과 인수가 결정된 물건에 대하여 적절한 요율을 산출하고 보험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청약된 보험 물건의 위험을 보험회사는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위험에 대한 이해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발생의 빈도와 심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손실통제 수단, 요율 및 요율구조의 변경, 계약조건의 수정, 공동보험의 사용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손해를 담보할 자본력이 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회사가 담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자본력이 요구되어질 때는 재보험 출재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리스크 분석과 재보험 활용 여부를 바탕으로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언더라이터는 보험계약 청약에 대해서 인수가 결정되면 위험인수에 대한 비용 즉 보험요율을 산출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산출된 보험요율을 가지고 보험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보험가격은 단순히 보험요율을 기초로 해서 산출되는 것은 아니다. 경쟁사가 협의요율을 사용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가 있다. 보험회사는 자신의 담보능력을 초과하는 위험부분을 재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것을 전제로 재보험

회사에서 저렴한 요율을 받아서 시장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이익을 취하게 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자신의 자본능력 안에서 손실을 해결하게 된다. 그러므로 손해보험회사 언더라이터는 단순히 산출된 보험요율을 바탕으로 가격을 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보험회사들의 가격들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하여야 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가격산출능력¹⁷⁾이라고 하며, 이것은 보험요율 산출능력과 별개로 요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보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가격을 산출하는 능력을 말한다.

17) 가격산출능력이라는 표현은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의미함.

Ⅲ. 일반손해보험요율 운영

1. 보험요율의 구성 및 형태¹⁸⁾

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담보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다른 제조업과 달리 정확한 원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고 보장기간이 지나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비교함으로써 원가판단이 가능하므로 확률 결정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확률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 확률을 기반으로 보험회사는 최종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요율로 표현하는데 이를 일반손해보험에서는 보험요율이라고 부른다.

보험요율은 순보험요율과 부가보험요율로 구분될 수 있다. 순보험요율과 부가보험요율을 합한 것을 영업보험요율¹⁹⁾이라고 한다. 순보험요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조건에 따라 손해보상으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 충당토록 산출된 요율을 말하는 것으로 산출시점에서 정확한 수준을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만약, 대수의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을 정도의 통계실적을 기초로 순보험요율이 산출될 경우 요율의 신뢰성이 증가하고 추정오류에 대한 안전할증의 부과 필요성이 감소하게 된다. 부가보험요율은 사업비율과 이익률로 구성된다. 사업비율은 보험담보제공과 관련한 보험자의 제반사업경비부분에 해당하는 요율로서 통상 원수보험료에 대한 사업경비의 비율(사업비율)로 표시된다. 사업비율은 보

18) '박상범(2006), 『손해보험론』 제6장'을 인용 및 참조하여 작성되었음.

19) 보험요율에 있어서 구분되어야 할 개념의 하나가 보험료와 보험요율임. 보험요율의 결정이란 보험단가당 가격을 산정하는 것임. 실무에서는 보험료라는 용어와 보험요율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도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

험자의 사전적인 통제가 가능하며 영업전략, 판매체계, 계약구성(소액 또는 고액, 신규 또는 갱신) 등에 따라 보험자별로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익률은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데 따른 장래 손해액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적절한 지급능력 유지 및 영리기업으로서의 이익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율 중에 포함된 부분이다.

보험요율은 등급요율과 개별요율로 구분된다. 모든 보험요율은 동질위험을 전제로 등급요율에서 출발하지만 위험단체의 속성상 개별요율 형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급요율은 동일한 등급에 속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한 요율은 그 등급 내의 평균치 요율을 의미한다. 개별요율은 보험대상의 위험 이질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출된 요율을 말한다.

2. 보험요율 산출방법²⁰⁾

보험요율의 산출이란 보험종목별 또는 위험적용 단위별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계산하여 영업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것이다. 보험요율 산출방법에는 판단법, 손해율법, 그리고 순보험료법이 있다. 보험회사는 때에 따라서 각 방법들을 혼용하여서 사용하기도 한다.

판단법이란 보험요율 산출방법 중 가장 오래된 방법이다.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대략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고 순전히 요율산정자, 즉 언더라이터의 경험과 판단에 근거를 둔다. 언더라이터의 오랜 경험과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위험 수준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 개별 언더라이터의 판단능력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개별 언더라이터의 오랜 경험으로만 향상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의 위험분석 능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20) '박상범(2006), 『손해보험론』 제6장을 인용 및 참조하여 작성되었음.

손해율법은 판단법과 같이 언더라이터의 경험적 판단에 의하기보다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요율산출을 하는 것으로 과거 경험통계자료가 있는 경우 자주 쓰이는 방법이다. 손해율법은 새롭게 요율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요율에 경험 손해율을 반영하여 새롭게 요율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요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실제손해율과 예정손해율을 비교하여 요율 조정율을 산출하여, 구요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때 손해액에 증가 혹은 감소추세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손해액진전계수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경과보험료 역시 현재 요율수준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text{요율 조정율} = \frac{\text{실제손해율} - \text{예정손해율}}{\text{예정손해율}} \times \text{신뢰도}$$

순보험료법은 손해율법과 달리 구요율을 조정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것이다. 즉, 손해율법과 달리 과거의 보험요율 유무와는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순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과거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사고 빈도를 추정하고, 과거의 사고발생빈도를 기초로 그 경향, 장래의 사회경제 환경의 예측, 기타 여러 가지 사고발생요인의 예측으로 장래 사고발생빈도를 예측한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통계자료에 의해 장래 사고발생빈도를 예측하고, 한편으로 과거의 통계자료에 의해 1건당 평균지급보험금을 구하고 여러 가지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여 장래의 평균지급보험을 예측한다. 그리하여 예측한 사고발생빈도와 평균 지급보험금을 곱하여 순보험료를 산출한다.

순보험료법은 충분한 경험통계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요율을 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대상물건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요율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분석에 대한 보험회사의 높은 역량이 요구된다. 따라서 순보험료법은 판단법에서의 리스크 분석능력과 손해율법의 충분한 경험통계자료가 합쳐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Ⅲ-1〉 보험료 산출방법비교

구분	방법	특징
판단법	언더라이터가 결정	통계가 부족할 때 주로 사용
손해율법	경험손해율을 반영하여 구요율 조정	경험통계가 쌓였을 때 사용
순보험료법	경험통계와 다양한 변수를 바탕으로 산출	경험통계와 위험분석능력 사용

3. 보험요율의 종류 및 장단점

가. 종류

일반손해보험의 요율은 크게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 그리고 협의요율로 구분된다. 자사요율은 각 보험회사가 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보험회사는 최초 인가 시 신고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자사요율 산출대상 보험종목은 경험실적이 적용대상단위별로 「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에 제시된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신뢰도 기준 30%²¹⁾를 충족하는 담보여야 한다.²²⁾ 자사요율 산출에 사용되는 통계는 최근 5개년을 원칙으로 하며, 통계산출방법은 역년통계, 사고연도통계, 증권연도 통계를 기준으로 하는 손해율 계산방식에 의한다. 그리고 요율 조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과거와 현재의 요율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요율수준을 수정할 경우에는 위험확장법,²³⁾ 평행사변형법²⁴⁾을 이용하여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급격한 손해율 변동, 거대손해액 발생 등으로 위험률을 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요인

21) 신뢰도 기준 30%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사고건수 기준으로 손해보험각사는 자사의 경험 자료가 이 건수보다 많을 경우 자사요율을 산출할 수 있음.

22) 위험률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2009. 6).

23) 각 증권마다 보험료산출기초(보험가입금액, 평균유효대수, 매출액, 면적 등)에 현행 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재산출함.

24) 위험(Exposure)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균등하게 분포된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간단한 기하학적 관계를 이용하여 경과보험료를 수정함.

의 효과를 반영한다. 단, 조정요인이 $\pm 5\%$ 이내인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text{신뢰도 반영 손해율} = \text{회사손해율} \times Z + \text{신뢰도보수손해율} \times (1 - Z)$$

$$\text{조정요인} = (\text{신뢰도 반영 손해율} / \text{예정 손해율}) - 1$$

참조순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이 산출하여 보험업계에 제공하는 요율을 말한다. 참조순보험요율은 보험업법 제176조 제4항²⁵⁾ 및 시행령 제87조 제1항²⁶⁾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²⁷⁾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위험율을 말한다. 보험회사는 매년 보험종목별, 위험적용단위별 계약 및 손해상황과 사업비 사용내역을 작성한 요율검증자료를 매 사업년도에 보험개발원에 제출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모든 손해 보험종목에 대해 보험요율 수준의 적정성여부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보험요율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보험요율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담보들에 대해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있다. 이는 보험개발원이 신고하는 요율로 손해보험회사는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보험개발원은 보증별로 산출한 참조순보험요율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참조순보험요율을 기준으로 할인할증을 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²⁸⁾

감독당국은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사경험율을 산출하지 못하는 회사들을 위하여 요율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협의요율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다.

협의요율은 손해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산출한 요율을 말하는 것으로 거대위험 또는 통계가 부족한 위험을 담보하는 기업성보험계약에 사용된다. 손해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기업성보험처럼 보험가입금액이 큰 보험계약에 대해서

25) 보험업법 제176조 제4항: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26) 보험업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하거나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이하 “참조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제시할 수 있음.

27) 현재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개발원임.

28) 요율적용 순서도와 보험료 계산식은 <부록 II-1>과 <부록 II-2> 참조.

는 재보험 출재를 전제로 보험계약을 체결을 한다. 손해보험회사의 자본력만으로는 담보할 수 없는 큰 계약은 보험계약을 포기하기보다는 보험회사의 담보능력 즉 자본력을 넘어서는 부분을 재보험회사에 전가함으로써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손해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와 사전에 보험요율을 협의한다. 이렇게 협의된 요율로 손해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면 사전에 약속된 조건에 따라 일정부분을 재보험회사에 출재함으로써 위험을 전가하게 된다.²⁹⁾ 따라서 협의요율은 문자 그대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요율이다. 손해보험회사는 보험대상의 위험에 대해서 재보험회사와 협의를 할 뿐만 아니라 재보험 가격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다. 협의대상은 출재비율 또는 재보험이익에 대한 이익분배(Profit Sharing)³⁰⁾ 등 다양한 조건들이다.

손해보험 초창기 우리나라는 경험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손해율법이나 순보험료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가 없었다. 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은 판단법으로만 산출할 수 있었으나, 충분한 경험이 쌓이지 않았고 위험분석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단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었다. 특히, 손해보험회사들이 충분한 자본력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한 위험을 전부 보유할 수가 없었고 재보험 출재를 통해서 위험을 전가하여야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보험회사의 요율을 사용해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밖에 없었다.³¹⁾

현재는 감독규정 개정 시(2011. 1. 24) 협의요율이라는 문구는 삭제되어 감독규정에서 협의요율이라는 공식적인 표현은 사라졌다. 과거 감독규정 제7-74조(일반손해보험의 필수기재사항 면제)에서 “재보험자와 협의된 보험요율”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면서 어떤 경우에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명시를 하였다. 그러나 감독규정 개정 시 이 조항은 삭제되고 대신에 감독규정 7-48조(공통사항 신고기준)에

29)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동보험이 있으나 이는 하나의 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나누어 인수하는 것으로 위험전가(risk transfer) 대신 나눔(risk sharing)의 의미를 가지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법적인 관계만 성립하나, 재보험은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간의 법률적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함.

30) 재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일부를 손해보험회사에게 돌려주는데 이것을 이익분배라고 함.

31) 협의요율 제도의 변천은 〈부록〉 참조.

서 기업성보험으로서 신고면제항목으로 기존의 협의요율 사용 대상을 명시하고 있어, 재보험 또는 협의요율이라는 표현은 사라졌다. 협의요율 대상이었다가 신고면제항목으로 변경된 보험계약은 <표 Ⅲ-9> 신설감독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보험회사는 여전히 신고면제항목에 명시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협의요율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 Ⅲ-2> 일반손해보험 요율 비교

구분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	협의요율
산출주체	원보험회사	보험개발원	원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요율기초	회사 경험통계 국내외 통계자료 참조순요율수정	업계가 제공한 과거 경험통계	경험실적, 개별위험특성 시장담보력등재보험 시장상황
기초서류	최초 인가 시 신고	신고 없음 보험개발원산출	신고 없음
적용대상	손해율이 검증된 중소형 물건		대형물건 및 신상품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은 경험통계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물건들이나 협의요율은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물건들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자사요율과 참조순보험요율은 중소형 물건을 중심으로 적용되나 기업성보험과 같은 대형물건 또는 신상품은 협의요율을 사용하고 있다.

나. 장단점

현재 보험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사요율은 각 회사의 경험통계와 국내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최소 5년의 통계³²⁾를 기초로 산출되기 때문에 최근에 보험회사가 계약한 담보들의 특징이 반영

32) 보험업 감독규정 7-789조(일반손해보험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에서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험회사들은 나름대로의 전략에 따라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이는 곧 경험으로 축적되어 회사 전략에 맞는 요율이 산출된다. 그러므로 자사요율은 회사의 전략을 가장 잘 반영하는 요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통계로 산출된 자사요율은 개별대상의 위험에 대한 평균적인 위험을 나타낸다. 따라서 동일한 위험을 가지는 집단에 대해서는 자사요율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동일한 위험속성을 가지지 않는 집단에서는 단순히 평균율이라는 의미일 뿐 개별 대상의 위험을 평가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개별대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계약 할인할증제도가 있으나 $\pm 10\%$ 범위³³⁾내에서 할인할증이 가능할 뿐이다. 특히, 직전연도에 혹은 최근 5년 이내에 특정 사건이 발생하여 손해율이 올라간 경우에는 이 사건이 자사요율 산출에 영향을 주어 산출된 자사요율이 시장에서 예상되는 요율보다 높게 설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사건이 발생한 대상 물건은 더 이상 계약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를 제외한 계약들의 평균이 시장의 평균적인 요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보다 높은 요율을 자사요율로 사용함에 따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자사요율은 동일한 위험속성을 가져서 손해율이 검증된 중소형 물건들에 대해서 주로 산출하고 있다.

참조손보험요율은 경험통계가 없는 회사도 요율을 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다. 모든 손해보험회사가 경험통계가 충분하여 자사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담보가 세분화되어 있어 다양한 담보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담보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시장에서 대형사들이 담보력과 브랜드 파워 등을 바탕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많은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중소형사는 대형사만큼 많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사경험을 축적하는 데 보다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대형사는 보다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사요율을 산출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여 많은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중소형사는 자사요율을 산출하지 못하고 계약을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업계의 평균적인 요율을 산출하여 업계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참조손보험요율이다.

33) 대부분 10%를 사용하나 상품에 따라서는 25%까지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손해보험회사는 업계 전체의 평균적인 요율인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할인 또는 할증을 통해서 최종적인 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자사경험요율이 없는 보험회사들도 참조순보험요율을 사용함으로써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참조순보험요율은 업계의 평균적인 요율이기 때문에 개별대상의 위험을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비록 개별계약 할인할증제도에 따라 $\pm 10\%$ 범위 내의 할인·할증을 통해서 개별대상의 특징을 반영하지만 정확한 위험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참조순보험요율도 손해율이 검증된 즉, 표준편차가 크지 않은 중소형 물건을 대상으로 주로 산출되고 있다.³⁴⁾

협의요율은 요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사경험율이나 참조순보험요율과 달리 개별 위험에 대해서 위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보험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요율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적정한 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보험조건을 수용할 수도 있다. 협의요율이 사용되는 계약은 기업성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다양한 보험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회사는 이를 반영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협의요율의 경우 이것이 가능하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위험의 편차가 크고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이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담보에 대해서도 요율을 제시할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는 경험이 전혀 없고 참조순보험요율도 없는 상황에서도 재보험자의 요율을 사용함으로써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거대위험을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거대위험은 사고발생 시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는 취급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재보험을 이용할 경우 위험을 전가함으로써 자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협의요율 사용은 보험회사의 관점에서는 중소형사도 언제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보험은 국경 간 거래가 허용되기³⁵⁾ 때문에 대형사

34) 일반손해보험회사는 기업성보험의 경우 손해율 편차보다는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액이 큰 계약의 재보험처리 문제나 보험사 간 요율경쟁 때문에 참조위험률의 사용에 소극적임.

35)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①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화보험계약, 수입적화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중소형사도 국내외 재보험회사와 협력하여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관점에서 가격인하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재보험회사의 요율을 사용함에 따라 위험의 정확한 원가를 알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재보험회사는 영업보험료 기준으로 요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정확한 순요율을 알 수가 없다. 재보험회사가 순요율을 제공하더라도 재보험회사는 순요율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는 알려주지는 않는다. 순요율의 산출근거나 방법은 재보험회사의 노하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보험회사는 이를 손해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보험회사가 순요율을 제공하더라도 재보험회사가 제공한 순요율이 정확한 순요율인지 아니면 재보험회사의 사업비가 포함된 요율인지는 알 수가 없다. 특히,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이 재보험회사와 협의를 할 경우 위험분석을 바탕으로 한 순요율의 수준에 대한 협의보다는 영업보험료 기준의 요율의 수준과 재보험조건 등을 주로 협의한다. 따라서 협의요율의 사용은 손해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위험분석 경험축적에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한편으로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재보험이 국경 간 거래가 허용되고 협의요율의 경우 신고가 면제되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는 전 세계의 어느 재보험회사와도 거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는 매우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재보험회사의 요율을 가지고 덤핑인수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나,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³⁶⁾

또한, 협의요율은 기본적으로 재보험 출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협의요율 사용은 재보험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회사가 보유할 수 없는 위험부분을 재보험회사에게 전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다.

36) 손해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에 모든 위험을 전가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부분 손해를 지게 됨.

〈표 Ⅲ-3〉 요율비교

구분	자사요율	참조손보험요율	협의요율
장점	회사의 특성 반영 동일 위험집단 원가파악	경험통계 없어도 사용 가능 업계평균 원가파악	탄력적으로 요율운영 중소형사 경쟁참여 가능
단점	개별대상 위험반영 한계	개별대상 위험반영 한계	원가를 정확히 모름 손해를 상승
기초서류	최초 인가 시 신고	신고 없음 보험개발원산출	신고 없음
적용대상	손해율이 검증된 중소형 물건		대형물건 및 신상품

한편, 업계의 지나친 협의요율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위험평가를 통한 요율산출 없이 재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협의요율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사용함에 따라 재보험회사가 갑자기 인수를 거부함으로써 손해보험회사가 상품을 계약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었다.³⁷⁾ 또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 등 재무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협의요율을 사용하고 재보험을 출재하였다가 재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³⁸⁾

4. 보험요율 사용 현황

손해보험회사는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자사요율, 참조손보험요율, 그리고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회사가 참조손보험요율 또는 협의요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사요율의 비중은 적은 편이다. 협의요율 사용 계약 비중은 지난 10년간(FY'03 ~ FY'12)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37) 태양광사업을 하는 A씨는 태양광 기자재의 파손 등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와 재산종합보험(협의요율 사용)을 체결하였으나, 해외 재보험자가 태양광사업의 손해를 악화로 이유로 요율 제시하기를 거부하여 보험에 재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자료: 재보험자 협의요율 제도 개선 추진방안(중간보고)).

38) 손해보험회사는 핸드폰 분실 시 보험금을 주는 핸드폰 분실보험에 대해서 국경 간 거래를 이용하여 외국의 재보험회사 BestRe와 재보험계약을 맺고 협의요율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보험금지급이 급등하자 재보험회사 BestRe가 재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사건임.

〈표 Ⅲ-4〉 협의요율 사용계약 비중

연도	FY'03	FY'05	FY'07	FY'09	FY'12
비중	64.8%	66.5%	66.7%	72.4%	76.3%

자료: 금융감독원 보고서(2014).

FY'12 기준으로 일반손해보험(상해보험 제외) 중 협의요율 사용계약 건수는 147만 건, 원수보험료는 2조 9,901억 원이다. 계약건수의 34.2%, 원수보험료의 69.0%³⁹⁾가 협의요율을 사용하고 있어 손해보험회사가 재보험자의 협의요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⁰⁾ 계약건수의 비중보다 원수보험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기업성보험에 협의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경우 패키지보험으로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이 수백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험료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업성보험은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록 계약건수로는 한 건이지만 보험료 비중으로 계산 시 협의요율 비중이 급격히 올라가게 된다.

상위⁴⁴¹⁾사의 경우 협의요율 사용 원수보험료 비중이 83.7%로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대형그룹물건이 많은 삼성화재가 87.8%로 가장 높고, 현대(86.3%), LIG(83.9%), 동부(70.6%) 순으로 사용 비중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상위 4사의 협의요율 사용 비중이 높은 이유는 같은 계열의 그룹사 물건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⁴²⁾⁴³⁾

한편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계약들의 손해율은 양호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이익측면에서 협의요율을 선호하기도 한다.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계약들의 손해율을

39) 농협손보를 제외할 경우 각각 36.1%, 76.3%로 비중이 상승함. 이는 2012년 3월 출범한 농협손보는 일반손해보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자사요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협의요율 사용 원수보험료 비중이 5.1%에 불과하기 때문임.

40) 금융감독원 보고서(2014).

41)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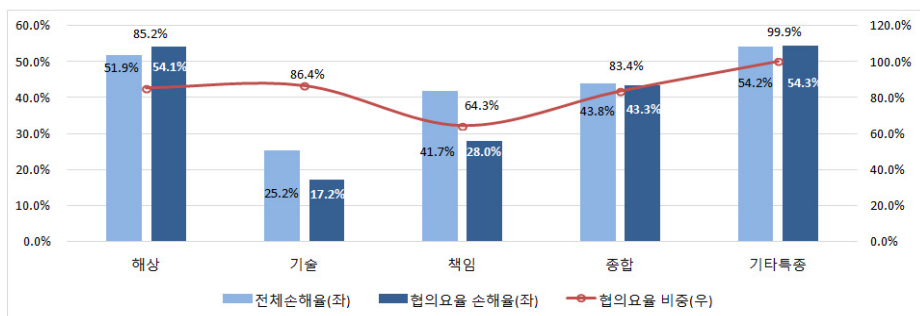
42) 그룹사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계열사에 수의계약을 하기보다는 공식적으로는 공모를 통한 경쟁을 통해서 계열사에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그룹계열사 물건을 취급하는 것이 Arm's Length Rule에 저촉된다고 보기 힘들.

43) 최근 삼성그룹은 삼성화재에 계열사 물건의 비중을 낮출 것을 요구함(머니투데이(2015. 4. 16),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41609235102061&outlink=1>).

살펴보면, 2013년 업계 전체 손해율은 81.3%였으나 협의요율 사용 계약들의 전체 손해율은 44.7%로 전체 손해율의 약 절반 정도의 수준이다.⁴⁴⁾ 자사요율이나 참조순보 협의요율의 경우 매년 경험자료가 반영되어서 요율이 산출되기 때문에 직전년도의 손해율이 요율에 반영된다. 따라서 요율의 실제 발생율에 일정부분 마진을 더하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협의요율은 재보험회사의 판단에 의한 판단율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손해율이 그대로 반영되지 못한다.⁴⁵⁾

보험상품별로 살펴보면 협의요율을 많이 사용하는 해상, 기술, 책임, 종합, 그리고 기타특종 보험의 손해율은 10%~50%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협의요율 사용 비중이 거의 100%인 기타특종의 경우에는 약 54%의 손해율을 보이고 있으며 협의요율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전체 책임보험의 손해율은 41.7%인 반면 협의요율 책임보험의 손해율은 28.0%를 나타내고 있다. 책임보험을 제외하고는 협의요율 사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체손해율과 협의요율 손해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Ⅲ-1〉 2013년 협의요율 손해율 및 비중 현황



44) 손해보험통계연보에서는 전체와 참조위험률 적용, 비적용 계약으로 구분해서 통계를 산출하였음. 자사위험률의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비적용 계약 전체를 협의요율 계약으로 간주하여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비적용 통계를 협의요율 통계로 간주하고 산출하였음 (보험개발원(각연도), 『손해보험통계연보』).

보험회사들이 위험평가능력 또는 가격산출능력 부족으로 인해 과도하게 높은 재보험료를 지불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일부 종목에서는 손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도 함.

45)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기업성 대형물건의 경우 매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단위로 손해율을 볼 경우 낮게 나올 수 있지만 여러 해를 합쳐서 볼 경우에는 손해율이 올라갈 수도 있음.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계약들의 낮은 손해율 수준은 2013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2005년도 협의요율 사용 비중이 높은 해상, 기술, 책임, 종합, 그리고 기타특종의 전체 손해율은 해상을 제외하고는 50%대 수준 혹은 이하를 기록하였다. 협의요율의 손해율도 해상을 제외하고는 전체 손해율과 거의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종목의 협의요율 사용 비중은 2005년도 이후 유지내지는 조금씩 증가해 왔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는 낮은 손해율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성보험의 특성상 협의요율을 사용하여왔고, 그 사용 비중을 늘려왔음을 알 수 있다.

〈표 Ⅲ-5〉 연도별 협의요율 손해율

구분	전체 손해율			협의요율 손해율		
	2005	2010	2013	2005	2010	2013
해상	68.2%	55.8%	51.9%	78.0%	58.3%	54.1%
기술	30.3%	34.9%	25.2%	25.7%	33.1%	17.2%
책임	25.8%	41.8%	41.7%	15.2%	26.0%	28.0%
종합	30.7%	47.9%	43.8%	27.6%	47.2%	43.3%
기타특종	38.3%	55.1%	54.2%	38.7%	55.3%	54.3%

자료: 보험개발원(각연도), 『손해보험통계연보』.

〈표 Ⅲ-6〉 연도별 협의요율 비중

구분	협의요율 비중		
	2005	2010	2013
해상	63.2%	86.2%	85.2%
기술	66.9%	72.6%	86.4%
책임	64.0%	65.5%	64.3%
종합	77.6%	74.4%	83.4%
기타특종	98.2%	99.6%	99.9%

자료: 보험개발원(각연도), 『손해보험통계연보』.

한편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재보험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협의요율 사용으로 인한 기업성보험의 재보험출재가 한 원인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재보험 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업계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⁴⁶⁾

그러나 이러한 재보험 수지 적자현상은 금융업보다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산업의 자본력(Capacity) 확충이 제조업의 성장을 따라 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국내 손해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는 자본력 및 기술력이 부족하여 인수한 리스크를 해외로 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⁴⁷⁾ 이는 협의요율의 사용으로 나타났다.

〈표 Ⅲ-7〉 재보험 거래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수재보험료			출재보험료		
	계	국내	해외	계	국내	해외
생명보험회사	96	0	96	6,142	4,657	1,485
원수손해 보험회사	4,661	2,343	2,318	28,390	21,947	6,443
전업재보험회사	34,019	27,336	6,683	10,885	2,457	8,428
소계	38,680	29,679	9,001	39,275	24,404	14,871
합계	38,776	29,679	9,097	45,417	29,061	16,356

주: 자료는 FY'12. 09월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102. 12. 31)를 수정하여 인용함.

김헌수·김석영(2015)은 손해보험회사의 보유 한도 측면에서 볼 때 재보험 출재가 과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⁴⁸⁾ 손해보험회사는 보유 한도를 늘려서 출재를 줄이거나 출재 자체를 안할 수도 있지만 위험선호도의 관점에서 재보험 출재는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으로부터 현재의 협의요율 사용 비중이 과도하지 않다는 결론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4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2. 12. 31 및 6. 25).

47) “김헌수 외(2015), 「손해보험사의 출재는 과다한가?」, 『보험금융연구』, p. 2”를 수정 인용함.

48) 손해보험산업 전체를 5개 종목의 단순한 손해보험사로 가정하여 분석함으로써 개별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개별회사 간의 손해율의 상쇄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음.

5. 관련제도 및 규정

우리나라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에서 요율 산출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127⁴⁹⁾조(기초서류의 신고)에서 기초서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 기초서류란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 등이다. 산출방법서에는 보험요율이 포함되며 따라서 보험요율이 어떠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었는지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손해보험도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산출방법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표 Ⅲ-8〉 과거 감독규정

제7-74조(일반손해보험의 필수기재사항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기재사항 중 보험요율 등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험회사는 국내의 경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담보위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어 재보험자와 협의된 보험요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상해담보위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업성보험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 가. 항공보험, 우주보험, 해양관련 종합보험계약 및 500톤 이상의 선박보험계약
 - 나. 담보물건의 보험가입금액이 1,500억 원을 초과하는 화재보험계약
 - 다. 담보물건의 보험가입금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등 이와 유사한 보험계약
 - 라. 참조순보험요율이 없는 배상책임보험계약
 - 마. 다수의 위험을 단일증권으로 담보하는 보험계약 중 포괄담보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이 없는 보험계약

그러나 감독당국은 일반손해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독규정 제7-74조(일반손해보험의 필수기재사항 면제)에서 보험요율에 대해서 기재를 면제해주었다. 이로 인

49)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①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 손해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산출된 협의요율과 기업정보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요율 산출과 관련해서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 여기서 명시된 기업정보보험의 항목은 본질적으로 재보험 출제가 전제되어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이 종목들을 협의요율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2011년 1월 24일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제7-74조(일반손해보험의 필수기재사항 면제) ① 항의 내용이 삭제되었다. 대신 신설된 감독규정 7-48조(공통사항 신고기준) ② 항에 기업정보보험에 대한 내용이 일부 수치만 조정되어 동일하게 들어갔다. 제7-48조의 영 별표 6 제1호 가목의 내용은 기초서류의 신고대상을 명시한 것이므로 신설된 감독규정의 내용은 신고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과거 감독규정 7-74조과 신설 감독규정 7-48조의 차이점은 과거 감독규정 7-74조는 요율기재를 면제해주는 것이나, 신설 감독규정 7-48조는 신고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손해보험회사는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기초서류 작성 시 요율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기초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제는 요율에 대한 기초서류를 작성해야 하지만 신고는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표 Ⅲ-9〉 신설 감독규정

제7-48조(공통사항 신고기준) ② 기업정보보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영 별표 6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항공보험, 우주보험, 해양관련 종합보험계약 및 1,000톤 이상의 선박보험계약
2. 담보물건의 보험가입금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화재보험계약
3. 담보물건의 보험가입금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등 이와 유사한 보험계약
4. 참조순보험요율이 없는 배상책임보험계약
5. 다수의 위험을 단일증권으로 담보하는 보험계약 중 포괄담보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이 없는 보험계약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험계약 외에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담보위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보험계약. 다만, 상해담보위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한편으로 감독규정 7-79조의 3(보험통계의 관리·집적 등)⁵⁰⁾이 신설되어 보험회사로 하여금 협의요율을 사용할 때 요율 산출근거와 담보별 순보험요율 및 보험금 통계

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이 협의요율을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요율 산출근거를 마련하고 통계를 집적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사요율을 산출하기를 원했으나 손해보험회사들은 협의요율 사용 비중을 오히려 늘림으로써 결국 감독당국은 규정으로 손해보험회사가 산출근거와 통계를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여전히 감독규정 7-79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보험회사는 손해보험회사와 요율을 협의하고 협의요율을 제공할 때 요율 산출근거는 일반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요율 산출근거는 재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재보험회사의 내부기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험대상의 위험 그 자체에 대해서 손해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가 요율 산출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율 수준 및 재보험 조건 등에 대해서 주로 협의를 할 뿐이다. 즉, 직전년도의 손해율을 근거로 해서 요율 수준을 조정하고 예상되는 이익의 규모에 따라 재보험 조건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통 기업성보험계약은 담보별로 체결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위험담보를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많이 체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보험회사는 패키지 형태의 보험계약에 대해서 영업보험료 형식으로 요율을 제공하고 있어 손해보험회사는 현실적으로 담보별로 순보험요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재보험회사가 순보험요율을 제공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인 순보험요율인지 재보험회사의 사업비 혹은 이익이 추가된 요율인지는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최근 감독당국은 재보험자 협의요율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후 주의사항을 손해보험회사에게 전달하였다.⁵¹⁾ 주의사항에서 보험요율의 조정 주기 및 기준 마련, 사용계약의 담보별 순보험요율 정의 등을 명확히 하고 회사 내부적으로 담보별 순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 통계를 집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손해보험회사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협의요율을 사용한 계약에 대해서 기초서류를 작성

50) 제7-79조의3(보험통계의 관리·집적 등) 보험회사는 재보험자와 협의된 보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경험실적, 재보험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 산출의 근거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에 대한 담보별 순보험요율 및 보험금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1. 24).

51) 금융감독원(2014. 10. 20), 협의요율 관리공문 “재보험자 협의요율 운영관련 주의사항”.

할 것을 지적받았다. 신설된 감독규정 7-48조는 기초서류의 신고를 면제했을 뿐 요율에 대한 기초서류 작성을 면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협의요율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독당국의 요구들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성보험의 특징 중 하나인 거대 위험은 단순히 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보험자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재보험으로의 위험전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보험자가 손해보험회사의 요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손해보험회사는 재보험자가 제시한 요율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한편으로 감독당국은 현재 협의요율의 과도한 사용과 현행 법규와 규정들에 문제점이 있음을 직시하고 개선을 위해서 업계 작업반을 구성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⁵²⁾ 손해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일반손해보험 요율제도의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6. 국내업계 요율 및 가격산출 현황⁵³⁾

손해보험회사들은 위험조사(혹은 Risk Survey) 부서를 통하여 보험대상의 위험을 평가한다. 위험조사 부서는 보험대상의 최대손해액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안전도는 어떠한지 등 관련된 위험을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언더라이터에게 전달한다. 예를 들면, 보고서에는 관리사항, 건물구조, 업종위험 소화설비 사항 등이 포함된다. 관리사항에서는 경영방침, 안전대책, 안전관리 조직, 위험물관리, 소방설비, 정리정돈, 안전교육 등을 확인하고, 건물구조에서는 내화, 불연, 가연재 구조조여부에 따른 위험도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소방설비에서는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

52) 2013년, 2014년 업계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015년에도 새롭게 구성하여 계속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음.

53)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들이 행하는 업무를 정리한 것임.

화설비, 화재탐지 및 경비설비, 수동소화 설비 등을 점검한다.

모든 보험회사가 위험조사팀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일부 보험회사는 내부조직으로 가지고 있는 반면, 어떤 보험회사는 외부에 아웃소싱을 하기도 한다. 외부 아웃소싱인 경우 자회사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회사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위험조사를 하지는 않는다. 대형물건 이거나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간사사인 경우에 한해서 위험조사를 한다. 소형 또는 중소형물건의 경우에는 통계가 어느 정도 집적이 되고 개별 물건들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위험조사보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한다. 소형물건일수록 개별 물건들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통계와 과거 경험손해율을 바탕으로 요율을 일반적으로 산출한다. 비록 생명보험처럼 개별계약이 동질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중형 또는 대형물건보다는 동질적이기 때문에 개별위험을 평가해서 요율을 산출하는 것보다는 평균요율과 손해율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건이 대형화될수록 동질성이 떨어져 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런 경우에는 위험조사를 통해서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요율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표 Ⅲ-10〉 규모별 요율 산출방법

구분	소형물건	중형물건	대형물건
요율 산출방법	통계 기반	통계/위험분석 기반	위험분석 기반

그리고 경험손해율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요율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경험손해율이 높으면 기존 요율보다 가격을 올리고 경험손해율이 낮으면 가격을 낮추는 형식으로 요율의 수준을 조정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위험조사에 의한 요율 산출보다는 계약의 성공여부이다. 보험회사는 꼭 계약을 체결해야겠다고 판단하면 위험조사에 상관 없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다. 보험회사의 담보능력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면 보험회사가 제시한 가격을 받아주는 재보험회사를 찾아가서 협의요율을 받아온다. 회사의 위험분석

을 기초로 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면 회사의 보유능력을 검토하여 능력 이상의 부분은 재보험회사에 넘기는 방법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업계 언더라이팅 현황은 효율산출능력을 중시하기보다는 가격산출능력을 중시하는 편이다. 즉 시장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지 회사가 위험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위험조사 부서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언더라이터는 위험을 평가하지만 이것이 효율 산출과 최종적인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재보험회사에 제공되기도 하지만 재보험회사에 제안하는 효율 혹은 가격에 어떻게 위험분석 결과가 반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효율의 유연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자사효율이나 참조순보험효율과 달리 협의효율은 자유롭게 그 수준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 시 회사가 원하는 수준의 협의효율을 제공하는 재보험회사를 찾을 수 있으면 산출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기업성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가지고 손해보험회사와 협상을 하기도 한다. 대규모 기업성보험의 특성상 실제로 보험에서 정의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통계와 예상되는 손실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기보다는 기업이 생각하는 수준의 보험료에 대해서 손해보험회사의 인수여부가 주요 관건이 된다. 손해보험회사는 나름의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겠지만 기업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요구하지 않는 한은 그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재보험회사를 찾아서 협의효율을 제시하는 실정이다. 재보험은 국경 간 거래가 허용되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는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재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재보험회사로부터 효율을 구할 수가 있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시장 환경하에서는 재보험회사의 효율에 의존하려 하고 자체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가격에 체계적으로 반영시키는 언더라이팅 프로세스를 갖출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게 된다. 특히 언더라이터가 체계적인 위험분석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한 효율이 인정되지 못하고 경험효율, 참조순보험효율 또는 협의효율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언더라이터의 효율산출능력을 향상시켜도 활

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보험회사는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 그리고 협의요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없다. 현행 요율운영체계는 자사요율이 최우선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이 참조순보험요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순서로 되어있다. 따라서 협의요율을 사용하다가 참조순보험요율이나 자사요율로 변경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참조순보험요율이나 자사요율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자사요율이나 협의요율을 사용하다가 협의요율로 순서를 바꾸어서 사용할 수는 없다. 현 감독규정에서 요율운영의 순서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통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이러한 순서가 정해졌으며 감독당국도 이러한 순서에 맞추어서 감독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협의요율의 유연성을 포기하고 참조순보험요율 또는 자사요율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감독당국은 참조순보험요율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감으로써 현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성보험의 특성상 참조순보험요율이 제공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중소형 물건들에 대해서는 참조순보험요율이 궁극적으로 가능하지만 대규모 기업성보험으로 갈수록 계약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참조순보험요율이 제공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대규모 기업성보험에 대한 협의요율의 사용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한편으로 감독규정 7-48조 4항은 참조순보험요율이 없는 배상책임보험계약에 대해서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은 계약담보의 범위를 참조순보험요율이 정의하는 것에 일부 소액담보를 추가함으로써 참조순보험요율이 없는 담보계약으로 변경한 후 협의요율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행위는 시장경쟁 속에서 현행 참조순보험요율이나 자사요율로는 자유롭게 경쟁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⁵⁴⁾

대규모 기업성보험물건에 대해서 손해보험회사들은 공동인수의 형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여러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후 자사의 자본능력 범위 내에서 보유하고 나머지는 재보험회사에게

54) 약의적으로 이러한 조항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

전가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계약을 주도하는 간사사가 주로 위험을 평가하고 요율을 결정한 후 이 요율로 참여할 회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동인수에 참여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을 할 필요가 없으며, 간사사의 언더라이팅 결과인 요율을 사용하면 된다. 이러한 공동행위는 언더라이팅능력이 떨어지는 중소형사에게는 중요한 영업행위이며, 산업 전체적으로는 국내 보유를 최대한 늘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공동인수를 지속할 경우에는 언더라이팅능력, 즉 위험평가를 통한 요율산출 능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7. 해외사례

외국의 경우 기업성보험의 보험요율은 시장원리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회사가 시장경쟁을 고려하여 자사요율 또는 재보사와 협의한 요율 중 경쟁력을 가지는 요율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율 선택에 있어서 감독당국의 규제는 없다. 특히 기업성보험의 경우 주요국에서는 참조순보험요율 사용 사례가 없다. 상품인가 시 승인받은 자사요율 또는 재보험회사 담보력이 필요한 경우 또는 통계가 없는 보험상품 및 신규위험에 대해서는 재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요율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상해보험 등 공공성 보험의 경우 요율산출기관 등에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는 있다. 일본, 인도네시아 등 일부국가에서만 지진, 자동차, 상해보험 등 대국민 이익과 밀접한 공공성·가계성보험 종목에 국한하여 참조순보험요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Ⅲ-11〉 해외 요율제도 비교

구분	국내	해외
자사요율	모든 계약에 사용	모든 계약에 사용
참조순보험요율	공공성 보험뿐만 아니라 기업성보험에도 사용	공공성, 가계성 보험만 사용
협의요율	특정 금액 이상만 (또는 참조순보험요율 없는 종목) 사용토록 제한	제한 없이 필요 시 자율적 사용

가. 일본⁵⁵⁾

1) 일본 요율규제의 변천

일본은 자유화 이전에는 사전인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⁵⁶⁾ 요율산출단체가 영업요율을 산출하여 인가를 취득하고, 보험회사 각사는 이 요율을 사용해야 하는 준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으로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인가·신청하는 요율이 있었다. 인가요율은 fixed premium에 $\pm 10\%$ 의 폭이 허용되었지만, 거의 고정으로 사용되었다. 각사는 요율산출단체가 영업요율을 산출하여 인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따로 인가 신청할 필요는 없었다.

1996년 4월에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화재보험에 신고제가 도입되었다. 그 이후 순차적으로 신고제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1998년 7월에 요율산출단체법이 개정되어 요율산출단체가 산출하는 요율이 준수 의무가 없는 참고순율이 되었다. 각사는 참고순율을 기초로 하여 개별적으로 인가신청을 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인가요율은 fixed premium에 $\pm 12.5\%$ 로 확대되었다. 특정종목, 물건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근거를 남겨두는 것으로 $\pm 12.5\%$ 의 폭을 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2006년 4월에는 부가율이 인가대상에 제외됨으로써 보험회사는 순율의 인가만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적정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상품개발의 활성화·신속한 보험상품의 제공을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국민이 요구하는 보험 니즈의 다양화·고도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고 국제표준을 근간으로 하는 가능한 자유롭고 투명성이 있는 보험제도의 구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55) MS&AD(2013)의 자료를 인용함.

56)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가 산출한 요율은 자유화 이전에는 사용의무가 있었으나 1998년 7월 요율자유화가 시행된 이후에는 사용의무가 사라졌음.

2) 요율규제 및 운영현황

일본 일반손해보험은 크게 가계분야와 기업분야로 구분된다. 가계분야는 가계지진보험, 자배책보험, 자동차보험, 그리고 가계화재보험 등이 있다. 기업분야는 기업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가계분야의 가계지진보험, 자배책보험은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가 기준요율을 결정하지만 자동차보험과 가계화재보험은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가 산출한 참고순율을 기초로 각사가 요율을 결정한다. 기업분야의 기업용 화재보험요율은 순율에 사업비율 및 이익률을 반영하여 구성된다. 통상 순율은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가 산출한 것을 참조하여 산출된다.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은 자사에서 산출한 순율 등을 기초로 요율을 결정한다. 배상책임보험뿐 아니라 해상보험·화물보험(Marine 분야) 등의 종목이나, 그 외 참고요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사 데이터에 기초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손해보험요율 산출기구의 회원보험회사는 자사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가계지진보험 또는 자배책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가 산출하여 회원 각 사에 제공한 기준요율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회원각사는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의 기준요율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금융청장관에 신고함으로써 보험업법에 근거하는 인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요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⁵⁷⁾

자동차보험과 가계화재보험의 경우 회원보험회사는 자사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가 제공한 참고순율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 각사는 참고순율을 사용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사업비율, 대리점 수수료율, 그리고 이윤을 부가하는 부가보험요율은 회원 각사가 자사에서 독자적으로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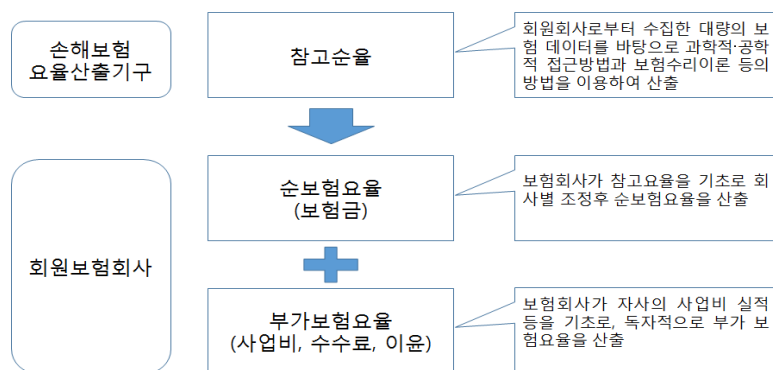
이렇게 산출된 자사의 보험요율은 금융청장관에게 인가신청(또는 신고)해야 한다. 금융청장관의 (사전)인가가 필요한 요율은 자배책보험, 지진보험, (임의)자동차보험(개별계약), 그리고 상해보험이다. 화재보험이나 그 외의 종목은 신고로 분리되지만, 실제로 신고할 때에는 당국의 사전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전)인가

57) 자사의 보험요율을 산출한 회원보험회사는 그 보험요율을 금융청장관에 인가신청(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신고대상 종목 중 기업분야(기업화재 등)에 대해서는 표준요율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요율 산출근거가 있는 한 요율변경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유요율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 다만 사업방법서에서 요율산출근거를 계약 체결 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요율을 산출할 때에는 요율의 3원칙 즉 합리성, 타당성, 공평성이 지켜져야 하며 이는 요율심사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합리성이란 요율산출에 이용되는 기초 데이터가 객관성이 있고, 정밀함을 의미한다. 타당성이란 요율이 보험계약자가 구입가능한 수준일 것, 즉 지나치게 비싸지 않을 것 그리고 보험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수준일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평성이란 특정인에게 부당한 차별적 취급이 없는 것이고 요율 체계·구분 및 요율 수준이 실제적인 격차에 기초하여 적절히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Ⅲ-2〉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와 보험회사의 관계



〈표 Ⅲ-12〉 참고순율 자유화 이전과 이후 비교

구분	손해보험 요율산출기구가 산출한 요율	요율의 사용의무
자유화 이전: ~1998년 6월	영업보험요율 산출 (영업보험요율=순보험요율 + 부가보험요율)	손해보험 요율산출기구가 산출한 요율의 사용의무 있음
자유화 이후: 1998년 7월~	순보험요율 산출	손해보험 요율산출기구가 산출한 요율의 사용의무 없음

한편 우리나라와 같은 재보험자 요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손해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산출한 요율을 자사의 요율로 인가신청한 후 사용하면 된다.

3) 참고순율의 산출방법과 검증

참고순율을 산출하기 위해 회원 보험회사는 각각의 보험 계약에 대하여 계약 조건 등의 계약 데이터 및 지급 보험금 및 보험사고 등의 지급 데이터를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에 보고한다.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는 집적된 계약 데이터와 지급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종 위험에 관한 참고순율을 과학적·공학적 방법이나 보험수리이론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참고순율은 산출된 시점에서는 적정하지만 사회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해 위험 실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참고순율이 적정한 수준인지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에서는 매년 참고 순율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청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타당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참고순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는 새로운 참고순율을 산출하여 금융청장관에게 신고하고 있다.

나. 미국

1) 손해보험 상품규제

미국의 보험상품 규제는 주로 손해보험상품에 대해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가형태는 주 감독당국이 주의 특징에 따라 보험약관과 보험요율에 대해 다양한 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는 손해보험의 요율과 약관규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제 공하고 있는데 동 가이드라인에서 요율과 약관규제형태를 정하고 있다.

미국의 보험상품 규제는 초기에는 사전인가형태에서 보다 경쟁적인 요율형태(competitive rating)인 File & Use, Use & File, Flex rating, No File 등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현재 38개주가 개인자동차보험과 주택종합보험 등 개인보험에 대해 경쟁적인 요율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뉴욕주의 경우는 1995년 사전인가에서 Flex rating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한편, 과거에는 요율산출기구인 ISO(Insurance Service Office)가 영업보험료를 산출하여 제시하다가 1989년부터는 참조순보험료를 산출하여 주보험청의 인가를 받아 회원사에게 제공하였다. 회원사는 요율산출기구의 참조순보험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독점법 등의 영향으로 ISO는 더 이상 참조순보험요율을 제시하지 않고 참조예상평균손해액(advisory average prospective loss costs)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ISO가 민간회사 Verisk Analytics로 전환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자료 및 통계 서비스, 제리서비스, 표준화된 보험약관 프로그램, 언더라이팅 정보, 리스크 선택 및 가격결정, 사기 감지 및 예방 등의 서비스를 보험회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손해보험회사는 독자적인 요율체계를 운영하면서 주 당국에 필요 시 신고 또는 인가를 받으면서 사용하고 있으며 재보험자의 요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표 Ⅲ-13〉 미국의 보험요율규제 형태

규제형태	내 용
State-made Rate	보험자가 사용할 요율과 규정을 감독청이 정함
Strict Prior Approval	요율사용 전에 감독청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Modified Prior Approval	손해실적에 따라 요율을 조정만하면 File & Use, 사업비부과와 위험세분화 등이 있으면 사전인가 필요
Flex Rating	감독당국이 정한 변동폭(Flex band) 내에서 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File and Use 또는 Use & File 하고 변동폭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전인가 필요
File and Use	요율사용 전에 요율과 규정을 신고하여 감독당국의 거부가 없는 한 인가되는 제도

〈표 Ⅲ-13〉의 계속

규제형태	내 용
Use and File	요율을 사용하고 나서 감독당국에 기초서류를 신고하여 특정기한이 경과하면 인가되는 제도
No File/Record Maintenance	감독청에 요율관련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감독당국이 주기적으로 기초서류작성 등에 대한 법규준수여부를 검사함

최근에는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계약자가 가입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를 면제시키는 법(ECPs: Exempt Commercial Policyholders)을 채택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보험계약자(Exempt Commercial Policyholder)는 일반계약자와 달리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보호하지 않아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만 들어놓은 규정들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보험회사와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정들을 면제하여 쌍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NAIC는 가이드라인⁵⁸⁾을 통해 전문보험계약자의 조건과 보험회사의 면제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보험계약을 할 수 있는 전문보험계약자(Exempt Commercial Policyholder)는 다음의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 순자산 5천만 달러 초과(Net worth of over 50 million)
- 순수입 또는 순매출액 1억 달러 이상(Net revenues or sales of over 100 million)
- 개별회사 종업원 500명 이상(지주회사 1,000명 이상)
(More than 5000 employees per individual company or 1,000 per holding company aggregates)
- 고용 또는 확보된 리스크관리자가 보험계약체결을 행하는 기업
(Procures its insurance through use of a risk manager, employed or retained)
- 합계보험료 50만 달러 초과(Aggregate premiums of over \$ 500,000)

58) Property and Casualty model rate and policy from regulation guideline.

- 연간 예산 또는 자산이 4,500만 달러의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Is a not for profit, or public entity with an annual budget or assets of at least \$45 million, or)
- 인구 5만 명을 초과하는 자치단체(Is a municipality with a population of over 50,000)

다음은 전문보험계약자에게 보험을 판매할 경우에 면제되는 사항들이다.

- 표준 요율 The rate standards specified in Section (insert appropriate reference)
- 신고 요율 The rate filing requirements specified in Section
(insert appropriate reference)
- 표준 상품약관 The policy form standards specified in Section
(insert appropriate reference)
- 신고 상품약관 The policy form filing requirements in specified in Section (insert appropriate reference)
- 근로자 보상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법률에 의한 의무보험을 포함한 이 주의 모든 법률 All laws of this state containing statutorily mandated policy language, except for those applying to worker's compensation policies or auto insurance policies

뉴욕주에서는 Free Trade Zone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Special Risk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Free Trade Zone에서 거래되는 Special Risk는 Article 63과 Regulation No86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두 종류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다.

- Class 1: 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연 보험료가 최소 \$100,000 이상, 또는 한 계약이 연 보험료가 \$100,000을 넘지 못할 경우 두 종류 이상의 합계 보험료가 \$200,000 이상이어야 함.
- Class 2: 흔치 않은 자연재해, 높은 손해의 위험, 또는 측정이 어려운 위험
(Unusual nature, a high loss hazard, or difficult to place)
※ Class 2에 해당하는 risk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Free Trade Zone은 자율시장을 통해 손해보험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1970년대 각 주(州) 보험청의 요율과 약관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담보력 위기를 초래하였고 이는 미국 내 우량담보의 해외출재를 유도하였다. 이는 사전인가 요율제도와 표준약관제도로 인해 중개인들은 보험회사의 위험을 직접 중개하거나 담보의 대상과 조건을 협상하여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보험업계가 특화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동안 로이즈(Lloyds)가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며 미국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갔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뉴욕 주는 1978년 Free Trade Zone을 설립하여 손해보험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최초 도입 시에도 Special risk에 대한 조건인 연보험료가 최소 \$100,000 이상이였다.

Free Trade Zone에서 영업을 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특별한 요구에 따라 약관을 쉽게 조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없었으면 보험회사들이 인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위험들도 이 제도를 통해서 보험회사들이 효율적으로 경쟁하면서 인수하게 되었다.

Free Trade Zone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 기준 222개 보험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아 영업 중이다.

〈표 Ⅲ-14〉 Direct and Net Premium written Special Risk

(단위: million \$)

Year	Direct Premiums Written	Net Premiums Written
2005	1,193.7	1,022.6
2006	1,510.3	1,286.2
2007	1,579.6	1,401.5
2008	2,462.0	2,243.6
2009	1,797.5	1,543.2

자료: New York State Insurance Department(2010), 152nd Annual report of the Superintendent.

IV. 개선방안

본 절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일반손해보험 및 언더라이팅의 특성, 그리고 요율운영 현황에서 살펴본 여러 요율들의 특성과 문제점들을 시장 전체적인 시각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일반손해보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한다.

1. 일반손해보험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현재 일반손해보험시장은 원수영업을 하는 일반손해보험 대형회사 및 중소형회사와 재보험영업을 하는 국내재보험회사와 외국계재보험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손해보험 대형회사는 규모와 요율산출 및 가격결정능력 측면에서 중소형회사와 차별화되고 있다. 대형보험회사들은 모두 산업자본의 계열사들로서 계열사 물건 수주와 상위사로서의 브랜드 파워 등으로 경험자료를 많이 축적할 수 있어 자사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중소형사는 대형사에 비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경험자료를 축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자사요율 산출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거의 참조순보험요율 또는 협의요율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사도 중소형사처럼 자사요율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참조요율 또는 협의요율 사용은 중소형사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자사요율산출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거대물건에 있어서는 재보험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

에 협의요율의 사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다만, 손해보험회사들이 협의요율을 사용하더라도 자체적인 위험평가는 요구되나 국내업계는 위험 측정 그 자체에 대해서 또는 위험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요율을 협의하지는 않고 경험손해율 등을 고려해서 요율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요율산출능력 배양 유인 부족

특히 소형사들의 경우 거대 물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위험을 평가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재보험회사와 협상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소형사가 재보험회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보험회사가 대형사보다 소형사의 위험평가를 덜 신뢰하기 때문에 소형사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형사는 위험평가를 통한 요율산출능력을 적극적으로 키울 요인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하는 요율산출능력이 시급한 과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시장에서 요구하는 가격 혹은 요율을 제공할 수 있는 재보험회사를 찾아서⁵⁹⁾ 최종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가격산출능력⁶⁰⁾이 필요한 것이다.

가격산출능력은 요율산출능력을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하지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요율산출능력을 바탕으로 손해보험회사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바탕으로 재보험회사와 협의를 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재보험회사가 너무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너무 낮은 가격을 요

59)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신용등급이 높은 재보험회사를 말하는 것임.

60) 가격산출능력으로 산출된 가격은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산출된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반해 요율산출능력에 의해서 산출된 가격은 순위협가격이라고 할 수 있음. 순위협가격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며 위험측정을 통해서 산출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위험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함. 동질의 집단에 대해서 경험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할 경우 집단의 분산이 일반적으로 매우 커서 추정값의 범위가 넓게 나타나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장이 수용하는 가격인 시장가격이 비록 순위협가격과 다를지라도 시장에서 담보하는 위험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수용되고 사용되어짐.

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분석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효율산출능력이 있으면 손해보험회사는 보다 주도적으로 재보험회사와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효율산출능력이 없더라도 손해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와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서 최종적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최종가격을 결정하는 능력을 가격결정능력이라고 할 때 중소형보험회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격결정능력이지 효율산출능력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재보험회사가 중소형사가 산출한 효율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중소형사는 가격결정능력을 키우고 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효율산출능력을 점진적으로 배양해나가야지 효율산출능력을 우선적으로 키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대형사의 경우에는 재보험회사와 협상하는 데 중소형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효율을 주도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 효율을 주도적으로 협상하기 위해서 효율산출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향후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형사의 경우에는 국내가 아닌 국외의 새로운 계약대상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효율을 산출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해외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가격산출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효율산출능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 협의효율 사용의 문제점

그러나 손해보험회사들이 자사효율을 산출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고 위험평가능력을 배양하여 자사효율을 사용하는 경우에 다시 참조순보험효율이나 협의효율을 사용할 수는 없다. 손해보험회사가 효율산출능력을 배양해서 적정한 효율과 그에 해당하는 가격을 산출하였는데, 다른 경쟁자가 협의효율을 사용하여 더 경쟁력이 있는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산출한 효율과 가격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효율산출능력을 키워 자사효율을 적극적으로 산출할 유인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시장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 그리고 협의요율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회사 전략변경 또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반드시 수재를 성사시키기 위해 자사요율을 사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계약 이후부터는 자사요율로 산출된 낮은 가격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위험물건 등을 향후 인수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손해보험 회사들은 쉽게 자사요율을 사용하지 못하고 협의요율을 계속 사용하게 되고, 재보험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협의요율은 일정한 수준의 가격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격조절 기능은 효율적인 시장경쟁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 혹은 협의요율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가장 저렴한 요율을 선택할 경우 협의요율만을 사용해서 결정되는 요율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요율운영체제는 소비자에게 최선의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협의요율의 유연성은 요율선택 비지율성과 맞물려서 협의요율에 더욱 더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자사요율과 참조순보험요율이 계약대상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협의요율은 대상물건의 특성을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는 협의요율을 더 선호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언더라이터가 대상물건 위험을 개인적 경험과 직관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판단요율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요율만이 유일하게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개별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물건들 특히 대형물건들은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 요율규제의 문제점

앞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요율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재보험자의 협의요율 사용에 관해 규정을 통해 규제하는 나라는 없었다. 따라서

외국의 보험회사는 자율적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필요 시 이를 신고 또는 인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 또는 인가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보험과 달리 기업성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굳이 신고 및 인가를 통해서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원활한 계약체결을 위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계약자의 경우에는 신고 및 인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특히 뉴욕주의 경우에는 Free Trade Zone이라는 것을 설정하여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전문보험계약자를 위한 면제와 별도로 신고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의 경우엔 보험요율 산출방법에 대한 규제보다는 신고 및 인가를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제조항들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요율산출에 대한 보고서(우리나라의 표현으로는 산출방법서)와 같은 것의 작성을 면제한다는 것은 아니다.⁶¹⁾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손해보험회사라면 기본적으로 보험영업을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산출방법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 최종적으로 요율과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 과정을 작성해야 하며, 이는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형식 또는 회사 내부규정에 의한 형식에 따라서 작성 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조사한 나라들과 미국의 주에서 이러한 산출방법서의 작성을 면제해준다는 조항은 찾을 수 없었다. 이것은 앞서 기술한 이유로 인해 작성면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요율사용 우선순위가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 그리고 협의요율로 정해져 있으며, 순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반해 외국의 경우에는 어떠한 요율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계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전문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신고사항들을 면제하여 보다 원활하게 시장이

61) No File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미국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보고서 작성과 신고(File)가 따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면 No File은 신고만을 면제한다는 것이지 보고서 작성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문함.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협의요율에 대해서만 신고를 면제해주고 있다.⁶²⁾ 이것도 과거에는 요율산출근거를 작성을 면제해주다가 규정이 신고면제로 변경되어 이제는 손해보험회사들이 요율산출근거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의 협의요율 사용 관습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들은 요율산출능력을 키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가격산출능력에 치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과거의 업무관행으로 인해서 요율의 산출근거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일반손해보험산업이 활성화되고 언더라이팅능력이 향상되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요율산출 체계 및 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2. 개선안

일반손해보험회사가 장기적으로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한 요율산출체계 및 운영체계의 개선방향은 회사의 자립성 강화, 자율성 강화, 요율산출 및 운영의 재무건전성 연계 및 내부통제역량 강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⁶³⁾

가. 회사의 자립성 강화

회사의 자립성은 일반손해보험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대상 위험을 평가하는데 재보험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손해보험회사의 역량에 기초해서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감독규정 7-48조 2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들이 재보험회사의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있는 보험

62) 정확하게는 과거 규정에서 협의요율에 해당하는 계약들임.

63)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개선안은 궁극적으로 가야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바로 적용하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음을 밝힘.

계약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렇게 감독규정에서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일반손해보험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요율을 산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회사가 필요할 때 재보험회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미리 규정으로 재보험회사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하고 이 경우에는 신고까지 면제함으로써(과거에는 산출방법의 기재사항 중 보험요율 기재를 면제) 일반손해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협의요율 사용을 더욱 유도하는 결과를 내고 있다. 더욱이 협의요율이 다른 요율보다 유연하게 개별 위험대상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이 협의요율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재보험자의 요율을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례는 없었다.⁶⁴⁾ 처음에 협의요율 관련 규정은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이 요율산출에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돕기 위해서 제정되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이 스스로 요율을 산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내고 있다. 따라서 일반손해보험회사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협의요율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다.

나. 자율성 강화

자율성이란 회사가 산출한 위험평가를 기초로 요율을 자유롭게 산출하는 것이다.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요율을 산출 또는 언더라이터의 경험과 개인적 판단에 기초해서 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손해보험회사가 위험평가를 기초한 가격과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회사의 자율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요율 산출조건의 수정이 필요하다. 일반손해보험의 특성상 충분한 통계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리고 생명보험과 달리 경험자료의 분산이 크기 때문에 통계를 확보하여도 신뢰할 수 있는 요율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에서 요구하는 요율산출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64)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국가에 한해서 말하는 것이며 모든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님.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적용의 대상에서 일반 손해보험요율은 제외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언더라이터의 판단에 기초해서 결정한 판단요율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통계적 경험자료뿐만 아니라 언더라이터의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산출한 판단요율을 인정함으로써 일반손해보험회사는 보다 유연하게 요율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위험대상의 특성을 반영해서 산출되는 현재의 협의요율처럼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언더라이터의 오랜 경험도 함께 반영할 수 있어 다양한 위험에 대해서 적절한 요율을 산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필요하면 재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요율을 결정함으로써 현재의 협의요율을 포함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현재의 협의요율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련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폐지되는 대신에 판단요율에 흡수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현재 자사요율, 참조손보험요율, 그리고 협의요율 순서로 정해져 있는 요율의 적용순서도 폐지되어야 한다. 일반손해보험회사는 자사요율, 참조손보험요율, 판단요율을 다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요율과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자사요율이 있다고 참조손보험요율과 판단요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요율과 최종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편, 감독규정에서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주장한 것처럼 협의요율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손해보험회사는 자율적으로 재보험회사와 협의할 것이며 이는 시장경쟁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요율산출 및 운영의 재무건전성 연계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은 회사들이 자유롭게 요율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지나치게 재보험회사에 의존하여 회사의 자립성을 오히려 훼손시킬 수도 있다. 즉, 지나친 자립성 강조는 위험을 평가할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

아서 재보험회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소형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자율성과 자립성의 적절한 균형은 필요하나 회사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독당국이 내부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부의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요율을 설정하든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요율을 설정하든 요율을 통해서 체결된 계약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산출된 요율의 안정성에 따라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충분한 경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요율은 보험료를 너무 적게 받을 확률이 낮은 반면 재보험회사의 판단에 의한 요율은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가 충분치 못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이 사용하는 요율을 재무건전성에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이 협의요율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기보다는 협의요율 사용을 통해서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다 확실한 통계를 기반으로 요율을 산출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기대되는 리스크는 분명 다른 것이므로 이러한 것들이 재무건전성 평가에 반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⁶⁵⁾

감독당국은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이 사용하는 요율을 회사의 경험통계자료가 반영된 정도에 따라 자사경험요율, 참조순보험요율, 판단요율, 협의요율로 구분하고 이 순서에 맞추어 요구자본 산출계수를 높이는 것이 요구되어진다.⁶⁶⁾ 협의요율에 대해서 보다 높은 위험계수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요구자본을 쌓도록 하면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은 무분별하게 협의요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⁶⁷⁾ 자사경험요율은 보

65) 재무건전성 규제를 자사경험을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문제가 향후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66) 실제 경험자료를 바탕으로 자사경험요율, 참조순보험요율, 판단요율, 협의요율의 요구자본 산출계수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그러므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경험통계에 기초한 요율을 사용할 때 이점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간단한 수치(예를 들어, 협의요율을 사용했을 때에는 기본 계수를 적용하고 자사요율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0.8을 곱하는 형식)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67) 협의요율을 사용한 계약이 안정적인 손해를 보이는 경우도 많아 협의요율에 대해서 요구자본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협의요율의 과도한 사용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목적임.

다 적은 자본을 요구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은 자사경험요율 사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일반손해보험회사는 회사의 요율산출 능력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도 함께 고려해서 요율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업계 현황을 바탕으로 위험계수의 정기적인 조정이 요구된다.⁶⁸⁾ 보험회사들이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보험사와 요율을 협의해서 가격을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시장경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요율의 사용을 재무건전성에 연계하는 제도는 불필요할 것이다.

라. 내부통제역량 강화

내부통제 역량이란 회사가 위험평가 및 요율과 가격을 산출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하는 역량을 말한다. 일반손해보험의 개별 위험 대상들은 이질적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측정 및 관리에 대한 내부 기준이 요구되어진다. 비록 개별 물건들의 위험이 상이하고 따라서 위험측정이 다를지라도 전체를 포괄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언더라이터 또는 평가 시점에 따라 동일한 혹은 비슷한 물건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회사가 감수할 수 있는 손실의 범위, 위험평가 방법, 목표수익률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립이 필요하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직전년도와 동일년도에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위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다른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유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며 상급자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 또한 내부기준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험평가와 이에 따른 가격설정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마련이 요구된다. 동일한 혹은 비슷한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혹은 비슷한 수준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요율을 산정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요구되어지며, 다른 가격이라도 회사가 정한 목표수익률 기준에 부합됨을

68) 지나치게 재무건전성에 연계함으로써 그림자규제로 변질될 수도 있으므로 업계의 상황을 반영해서 조정이 요구되어짐.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5개의 위험 물건 A, B, C, D, E를 하나의 보험에 가입하는 종합보험의 경우에 위험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각각의 가격이 100, 200, 100, 50, 150이었는데 올해는 C의 가격을 10으로 평가하였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써 A~E까지 모두 합한 이익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시장경쟁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설명이 첨부되어야 할 것이다.

감독당국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부기준의 형태를 업계와 상의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갖추어야 할 내부기준이 무엇인지를 내부기준 표준안(가칭)으로 제공함으로써 회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내부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반손해보험회사는 감독당국으로부터 회사의 내부기준이 표준안의 조건을 만족시킴을 확인받은 후 이 기준에 따라 요율 및 가격을 결정하면 될 것이다. 감독당국은 정기적으로 각사가 실제로 각사의 내부기준에 맞게 요율 및 가격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면 된다. 그럼으로써 감독당국은 시장이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회사들은 자사의 특성을 살려 내부기준을 정교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부기준 설립은 도입 초기에는 회사들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기본안은 도입 초기에는 느슨한 형태를 유지하다가 점진적으로 정교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회사들의 내부기준 마련과 운영 상황을 살펴 본 후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내부기준 표준안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부 기업성보험 계약자들은 보험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및 규정이 필요치 않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신고 제도와 이에 따른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이 기업성보험 계약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경우에도 여러 주에서 전문보험계약자(Exempt Commercial Policyholder)에 대해서 요율산출기준과 신고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규정 감독규정 7-48 조 2항은 신고를 면제해주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협의요율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 개정 시에 신고면제조항으로 변경된 것일 뿐이다. 감독당국이

보호할 필요가 없는 전문보험계약자를 정의한 것이 아니다. 미국 NAIC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전문보험계약자에 대해서 정의하고 이 계약자들이 계약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보험계약자는 보험업법 제2조 19항⁶⁹⁾에서 정의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 한국은행 및 일부 금융기관들이다. 그러므로 일반손해보험 전문보험계약자라는 것을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산출방법서와 같은 기초서류 작성을 면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내부기준 설립을 통해서 요율을 산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율을 어떠한 근거로 산출하였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은 그 보고서를 기초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서 내부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대효과

요율사용에 있어서 판단요율의 사용을 인정하고 협의요율도 함께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기존의 요율산출체계는 크게 변하지 않으나, 사용하는 요율에 따라 재무건전성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자사요율 산출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언더라이터의 판단요율을 인정함에 따라 언더라이터의 역량이 보다 중요시될 것이다. 소형 물건 또는 일부 중형 물건은 경험통계자료를 통한 요율 산출이 개별 대상 물건의 위험을 반영하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다른 중 소형 물건 혹은 대형 물건은 개별특성이 크기 때문에 통계를 활용한 요율 산출은 개별 위험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나 판단요율을 사용함으로써 개별 물건의 위

69) 보험업법 제2조(정의)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험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요율을 산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 그리고 협의요율의 순으로 사용 순서가 정해져 있던 것이 사라짐에 따라 시장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가격인하가 예상된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중소형 일반손해보험회사는 모든 리스크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영역에 집중해서 위험을 평가하고 요율을 산출하는 능력을 키우는 전략이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일부회사가 특정영역에서 특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든 영역에서 대형사와 경쟁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화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형사는 자사경험요율 산출에서 유리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자사경험요율을 산출하지 않고, 참조순보험요율이나 협의요율에 기초하여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중소형사들이 판단요율을 이용하여 저렴한 요율 산출이 가능해지면 대형사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언더라이터의 능력 증진 및 자사경험율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스스로 위험을 평가함으로써 재보험회사와의 협의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건전성 기준에 요율산출을 연계함으로써 협의요율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나아가서 연계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감에 따라 협의요율의 사용도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내부기준 표준안을 정기적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게 수정·보완함으로써 업계의 요율 산출역량 및 가격산출 역량이 강화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V. 결론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산업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손해보험산업이 기여한 부문은 적지 않다. 그러나 60년대 초창기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산업도 경험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스스로 요율을 산출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특히 자본력의 부족으로 외국계 재보험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재보험회사의 요율을 구독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협의요율이 탄생하게 되었다.

협의요율은 초창기에 일반손해보험 산업이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우리나라 일반손해보험 산업이 성장하고 이에 따라 경험이 축적되어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점 축소되어 구독요율이라는 표현에서 협의요율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는 등 협의요율 관련 제도도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조금씩 변화되어 왔다.

감독당국은 일반손해보험회사가 협의요율 사용을 줄이는 대신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요율을 산출하는 요율산출역량을 키울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협의요율의 사용 비중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더 나아가서는 악용하는 사례들이 보고됨에 따라 감독당국은 이의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협의요율사용 문제는 일반손해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로부터 요율을 단순히 적게 받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일반손해보험산업의 특성상 거대물건을 인수하는 경우 일반손해보험회사의 자본력 한계로 일정부분 이상은 재보험회사에 전가를 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재보험회사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협의요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통계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재보험회사의 도

움을 통해서 요율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과 규정은 요율을 개별 물건에 맞추어 유연하게 산출하고 사용하는 데 제한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오히려 요율을 유연하게 산출할 수 있는 협의요율 사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한편으로 협의요율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감독당국은 자사요율 산출을 권장하고 참조순보험요율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형 회사들은 요율산출능력을 강화하여 자사요율을 산출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 자사요율을 산출하더라도 재보험 회사와의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사요율을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참조순보험요율의 확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은 될 수 있겠으나 참조순보험요율에 계속 의존하게 되면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이 스스로 요율을 산출하는 능력을 오히려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협의요율의 부작용을 강조하여 이의 사용을 제한하고 위험평가를 통한 요율산출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요율산출능력을 강화하여 일반손해보험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향후에는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는 단순히 협의요율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형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해외진출 자체가 목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요율산출능력보다는 가격산출능력이 보다 더 요구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요율산출체계와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요율사용에 자율성이 없다는 것이다. 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 협의요율로 구분되어지는 요율체계는 다른 요율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이 필요 시 다른 요율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언더라이터가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한 판단요율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반손해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율산출체계 및 운영체계의 개선방향은 회사의 자립성, 자율성, 내부통제역량 강화 그리고 요율산출 및 운영의 재무건전성 연계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회사가 스스로 요율을 산출하는 능력을 가지는 자립성을 키우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산출되는 요율

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기본적인 내부통제 기준에서 이루어져 회사 내부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업계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통일된 원칙하에 효율이 산출되고 운영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산출된 효율의 신뢰성에 대한 책임으로 보험회사들에게 적절한 요구자본을 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반손해보험 효율산출과 관련된 보험업법과 감독규정 조항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되어진다. 통계를 기반으로 효율을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효율산출의 원칙과 협의효율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신고면제와 관련된 조항들의 수정 또는 삭제가 요구되어진다. 한편으로는 전문보험계약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의 설치,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기준 표준안 마련, 그리고 재무건전성 규제의 수정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은 각사의 역량에 맞추어서 위험평가를 통한 효율산출능력을 또는 가격산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고 회사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손해보험산업이 세계 9위의 시장으로 성장한 시점에서 일반손해보험 효율산출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손해보험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2012), 『FY12 상반기(12. 4월~9월) 재보험 실적 분석 및 향후 감독방안』.
_____ (2013), 『손해보험회사의 재보험자 협의요율 제도 개선방안』.
_____ (2014a), 『재보험자 협의요율 제도개선 추진방안』.
_____ (2014b), 『재보험자 협의요율 운영관련 주의사항』.
김헌수 · 김석영(2015), 「손해보험회사의 출재는 과다한가?」, 『보험금융연구』.
보험경영연구회(2010), 『보험과 리스크 관리』.
박상범(2006), 『손해보험론』.
보험개발원(각연도), 『손해보험통계연보』.
삼성화재(2005), 『손해보험개론』.
서영길 · 박중영(1998),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성대규 · 안중민(2014), 『한국보험업법』.
송윤아(2014), 『일반손해보험 활성화 방안: 보험거래소 설립』, 내부보고서, 보험연구원.
이규연(1999), 「손해보험가격결정모형에 관한 이론적 연구」, 『보험학회지』.
이승준(2015), 『미국 보험시장 요율규제 검토』, 내부보고서, 보험연구원.
이희춘(2001), 『일반손해보험 가격자유화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보험개발원.
정중영 · 전환기(2005), 『손해보험회사 발전방안』, 보험개발원.
최용민(2013), 『재보험 이론과 실무』.

- Emilio C. Venezian(1985), “Ratemaking Methods and Profit Cycles in Property and Liability Insurance”, American Risk and Insurance Association, Vol. 52, No. 3.
MS&AD(2013), “일본의 기업분야 화재보험의 요율산정”, 세미나 발표자료.
New York State Insurance Department(2010), “152nd Annual report of the Superintendent”.
Scott E. Harrington(1987), “A Note on the Impact of Auto Insurance Rate Regul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9, No.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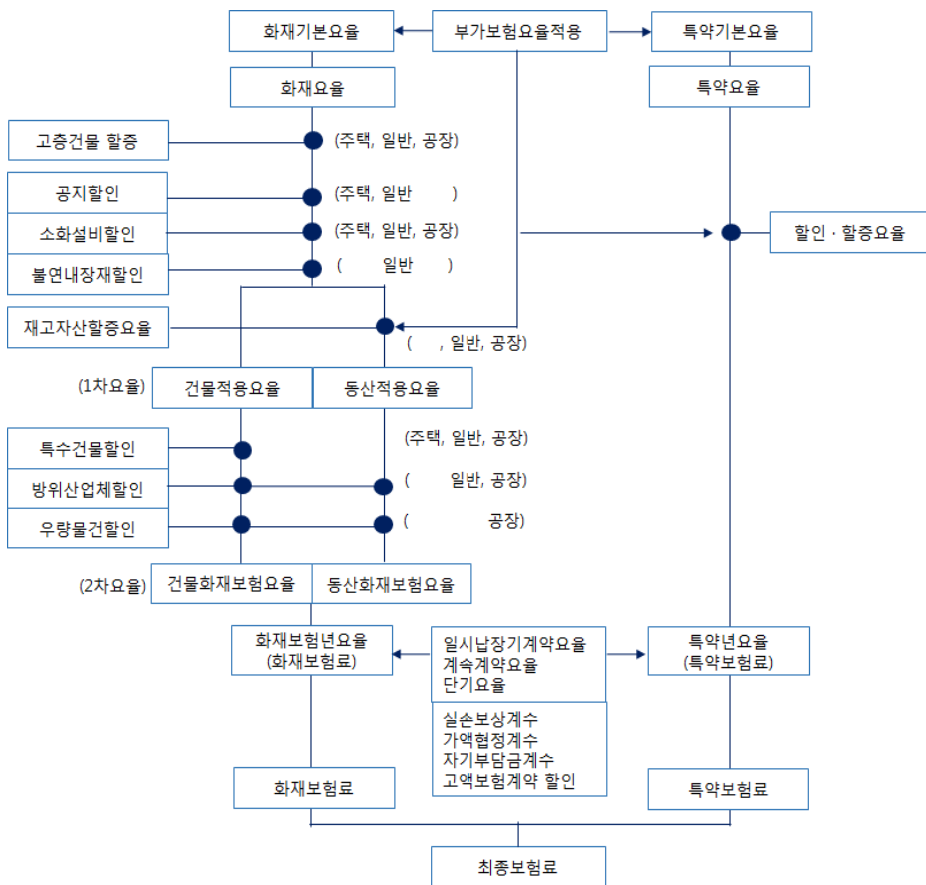
부록 I. 재보험자 협의요율 제도 변천

재보험자 협의요율 제도의 변천을 간단히 살펴보면 '68년 재무부는 재산종합보험을 인가⁷⁰⁾하면서 90% 이상을 해외출재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면서 재보험회사 협의요율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83년에는 재보험자 요율구득 창구를 대한재보험으로 일원화하는 “보험요율 구득에 관한 협정”을 마련하였었다. 그러나 협의요율은 '90년 한국선주협회의 선박보험요율 담합 주장, '91년 한-미 금융회의에서 협정 폐지 논의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되다가 '97년에 전부 폐지되어 재보험시장이 완전자유화되었다. 그러나 협의요율이 지속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00년 재보험계약이 전제되는 거대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이나 국내의 경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담보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보험계약(상해담보 제외)으로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보험계약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03년에는 경험자료를 축적하여 향후 자사요율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협의요율 사용계약에 대해서 요율산출 근거 보관 및 통계 관리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11년에는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예를 들어 선박보험의 경우 기존에는 500톤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 협의요율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이를 1,000톤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협의요율 사용 범위를 축소하였다.

70) '65년 이후 재무부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진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에게 건설종합보험, 상공종합보험, 주택종합보험, 도난보험 등 신규 보험종목 취급을 인가함.

부록 Ⅱ. 보험요율 현황

〈부록 그림 Ⅱ-1〉 요율적용 순서도⁷¹⁾



71) 보험개발원, 재물보험 참조순보험요율.

〈부록 그림 II-1〉 보험료 계산식⁷²⁾

① 기본요율 계산

화재요율 = 화재기본요율에 부가보험요율 적용

특약요율 = 특약기본요율에 부가보험요율 적용

② 건물 및 동산 적용요율(1차요율) 계산

건물적용요율 = 기본요율 × (1 + 고층건물할증)(1 - 공지할인)(1 - 소화설비할인)
× (1 - 불연내장재할인)

동산적용요율 = 기본요율 × (1 + 고층건물할증)(1 - 공지할인)(1 - 소화설비할인)
× (1 - 불연내장재할인) + 재고자산할증요율

※ 재고자산할증요율은 부가보험요율을 적용한 후 가산한다.

③ 건물 및 동산 화재년요율 및 특약년요율(2차요율) 계산

건물화재보험요율 = 건물적용요율 × (1 - 특수건물할인)(1 - 방위산업체할인)
× (1 - 우량물건할인)

동산화재보험요율 = 동산적용요율 × (1 - 방위산업체할인)(1 - 우량물건할인)

특약년요율 = 특약기본요율에 해당 특약별 할인 · 할증 적용

※ 특약년요율 계산시 할인 · 할증요율은 부가보험요율을 적용한 후 계산한다.

④ 화재보험요율 및 특약보험요율 계산

화재보험요율 = 화재보험연요율 × 일시납장기계약요율(계속계약요율, 단기요율)
× (1 - 고액계약할인율)(손보상특약계수)(가액협정담보특약계수)
× (자기부담금계수)

특약보험요율 = 특약년요율 × 일시납장기계약요율(계속계약요율, 단기요율)
× (1 - 고액계약할인율)(손보상특약계수)(가액협정담보특약계수)
× (자기부담금계수)

※ 실손보상 및 가액협정담보특약계수는 동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최종보험료의 계산

최종보험료 = 화재보험료 + 특약보험료

72) 보험개발원, 재물보험 참조순보험요율.

부록 Ⅲ: 미국 주별 요율 규제

〈부록 표 Ⅲ-1〉 미국 주별 요율 규제 현황

구분	사전 인가	수정 사전인가	범위 요율	신고 후 사용	사용 후 신고	주규정 요율	신고 불요
알라 바마	개인성종목, 의료배상과 기타 타종목의 경우 전체적인 요율의 10% 이상 인상	-	-	기업성종목의 재물/상해 (의료배상과 기타 타종목의 경우 전체적인 요율의 10% 이상 인상 제외)	-	-	-
알라 스카	의료배상	-	요율수준 변경 10% 이하 (의료배상 및 면제기업성 물건 제외)	면제기업성물건과 의료배상 및 범위 요율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종목	-	면제 기업성 물건	-
아리 조나	-	-	-	-	면제종목과 공업물건을 제외한 모든 종목	-	면제 종목과 공업물건
아칸스	-	-	-	개인성종목, 고용주배상, 전문가배상	-	-	기업성 위험
캘리 포니아	모든 종목	-	-	-	-	-	-
콜로 라도	-	-	-	면제상업물건을 제외한 모든 종목	-	-	면제 상업물건
코네 티켓	고용주배상, private passenger territories	-	-	모든종목 (좌기종목 제외)	-	-	-
델라 웨어	-	-	-	특정대형위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	-	-	특정 대형위험
D.C.	-	-	-	면제상업위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	-	-	면제 상업위험

구분	사전 인가	수정 사전인가	범위 요율	신고 후 사용	사용 후 신고	주요정 요율	신고 불요
플로 리다	-	-	-	commercial inland marine을 제외한 모든 종목 (선택)	commercial inland marine을 제외한 모든 종목 (선택)	-	commerci al inland marine
조지아	private passenger 자동차요율 인상	-	-	좌기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요율 인상. 대형상업 위험을 제외한 요율 인하	-	-	대형 상업 위험
하와이	모든 종목	-	-	-	-	-	-
아이 다호	-	-	-	모든 종목	-	-	-
일리 노이	-	-	-	모든종목	-	-	-
인디 아나	-	-	-	근재, 전문직배상, 면제상업물건을 제외한 모든 종목	-	-	근재, 전문직 배상, 면제 상업물건
아이 오와	private passenger 자동차보험, 홈오너를 제외한 모든 종목	-	-	private passenger 자동차보험, 홈오너	-	-	-
칸사스	건강관리 제공배상	-	-	건강관리제공배상 및 특별위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	-	-	특별 위험
켄터키	개인성종목과 지정종목에서 1년 내 25%를 초과하여 요율이 조정될 경우 (공업물건과 면제상업물건 제외)	-	flex band (일정범위) 내에서 요율이 조정된 개인성 종목과 지정된 기업성종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엔 사전인가 준용	-	개인성종목과 지정종목에서 1년 내 25% 이하로 요율이 조정될 경우 (공업물건과 면제상업물건 제외)	-	공업 물건, 면제 상업 물건

구분	사전 인가	수정 사전인가	범위 요율	신고 후 사용	사용 후 신고	주요정 요율	신고 불요
루이지애나	-	개인성 종목과 의료전문 직배상의 회사 요율 조정이 범위 요율이나 신고후 요율 조항에 부적합한 경우	개인성 종목과 의료전문직 배상의 전체적인 평균 요율 수준의 조정이 10% 이하일 경우	개인성 종목과 의료전문직 배상 요율이 손실경험에만 의존한 경우와 요율과 비용간의 관계에 변화가 없는 경우, 기업성종목	-	-	면제 상업 물건
메인	-	-	-	대형상업물건을 제외한 모든 종목	-	-	대형 상업 물건
메릴 랜드	의료배상	-	-	의료배상을 제외한 모든 종목	-	-	-
메사츄 세츠	private passenger 자동차보험의 회사요율변경	-	-	private passenger 자동차보험과 대형상업물건을 제외한 모든 종목	private passenger 자동차보험	-	대형 상업 물건
미시간	모든 종목 private passenger 자동차보험, 홈오너, 주택화재를 제외한 모든 종목(선택). 면제상업물건	-	-	private passenger 자동차보험, 홈오너, 주택화재 (선택)	-	-	면제 상업 물건
미네 소타	-	-	-	개인성 종목과 개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전문직배상	-	-	개인에 담보를 제공하는 전문 직배상을 제외한 기업성 증권
미시 시피	모든 종목	-	-	-	-	-	-
미주리	-	-	-	-	기업성상해, 기업성재물을 제외한 모든 종목	-	-
몬타나	-	-	-	모든 종목	-	-	-

구분	사전 인가	수정 사전인가	범위 요율	신고 후 사용	사용 후 신고	주요정 요율	신고 불요
네브 라스카	의료전문 직배상, nonfleet automobile	-	-	모든 개인성 기업성 종목 (의료전문직배상, nonfleet automobile, 면제상업 위험 제외)	-	-	면제 상업 물건
네바다	개인성종목, 지정된 전문직 배상	-	-	-	-	-	기업성 종목, 지정된 전문직 배상제외
뉴 햄프셔	-	-	-	모든 개인성 종목	기업성종목 (고용인 과실배상, D&O, boiler& Machinery, 대형 기업성 물건 제외)	-	고용인과 실배상, D&O, boiler& Machinery, 대형 기업성 물건 제외
뉴저지	private passenger automobile을 제외한 개인성종목과 홈오너에서 5% 이상 요율을 인상하는 경우와 private passenger automobile 요율조정 (주 평균 기초율에서 7% 이내로 조정하는 경우 제외)	private passenger automobile 요율 조정 (주 평균 기초율 에서 7% 이내로 조정하는 경우), 홈오너 요율 전체가 5%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와 인하하는 경우	-	-	특별위험을 제외한 기업성종목	-	특별 위험
뉴 멕시코	개인성종목, farmowner, ranchowner, 전문직 배상	-	-	좌기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	-	-	-

구분	사전 인가	수정 사전인가	범위 요율	신고 후 사용	사용 후 신고	주요정 요율	신고 불요
뉴욕	임대차량 (버스, 통학버스 포함) 요율인상, private passenger automobile, 의료배상, 권역별, 세분화 (모든 종목)	-	지정된 기업성 종목	임대차량 (버스, 통학버스포함) 요율인상, private passenger automobile, 의료배상, inland marine, 면제종목과 요율세분화 혹은 권역별 요율 (모든종목) 제외	-	-	Inland marine, 면제종목
노스 캐롤 라이나	private passenger automobile, 홈오너, 주택화재, mobile homeowners	-	-	좌기종목 제외한 모든 종목	-	-	-
노스 다코타	모든 종목	-	-	-	-	-	-
오하 이오	모든 재물성 종목	-	-	motor vehicle insurance, 홈오너와 기업성 다중재해와 같은 상해성 종목. 재물과 배상을 동시에 담보하는 패키지보험	-	-	-
오클라 호마	의사배상	-	-	-	의사배상과 기업성 특별위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	-	기업성 특별 위험

구분	사전 인가	수정 사전인가	범위 요율	신고 후 사용	사용 후 신고	주규정 요율	신고 불요
오레곤	다음 영업배상에 대해 15% 이상 요율인상 시 사전검증: childcare, 영업용자동차, long haul trucking, D&O, liquor law, municipal, 의료전문인, nonprofit philanthropic and civil activity, 생산물배상, 전문인배상 (의료배상제외), public and recreational, 사전검증절차는 total limmits base rates, rating basis, rating plans, manual rules, territorial definitions, 또는 이상의 요율산출시스템 요소의 결합에 대해 15% 이상의 요율인상 또는 인하의 경우에 적용	-	-	모든 종목 (좌기종목 제외)	-	-	-
펜실 바니아	10% 이내 요율인하 자동차보험과 10% 이내 요율인상, 인하하는 소형기업성보험, 요율인상 또는 10% 초과 요율인하하는 대형 기업성 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	-	10% 이내 요율인하 자동차 보험과 10% 이내 요율인상, 인하하는 소형 기업성 위험을 제외한 종목	자동차보험 10% 이내의 요율인하 신고	-	-	대형 기업성 위험

구분	사전 인가	수정 사전인가	범위 요율	신고 후 사용	사용 후 신고	주요정 요율	신고 불요
PR	면제기업성 종목 이외의 모든 종목	-	-	-	-	-	면제 기업성 종목
로드 아일 랜드	의료배상	-	-	5% 이내 주전체 개인성 종목 요율조정과 의료배상 및 기업성 특별위험을 제외한 기업성 종목	-	-	특별 개발 기업성 특별위험 및 기업성 특별 위험
사우스 캐롤 라이나	모든 종목 (우기 종목 제외)	-	-	회사의 현행 요율의 상하7%까지 인상 또는 인하하는 개인성 종목 신고	-	-	면제 종목 및 면제 기업성 계약
사우스 다코타	-	-	-	모든 종목(우기 종목 제외)	-	-	면제 기업성 계약자
테네시	“개인 위험” 보험	-	-	-	기업성 종목	-	-
텍사스	-	-	-	면제 종목을 제외한 주거용, 기업용 재물, 배상, 보일러 및 기계류, 범죄, 유리, 기타상해, 기업성 포괄 및 초과배상, 농장 및 목장소유자, 의료전문인배상, 영업용 및 개인용 자동차, 육상운송, 기업성 다중위험, 개인상해 (개인배상 및 개인 포괄 포함)	-	-	면제 종목
유타	-	-	-	-	기업성 초과 및 포괄책임을 제외한 모든 종목	-	기업성 초과 및 포괄책임

구분	사전 인가	수정 사전인가	범위 요율	신고 후 사용	사용 후 신고	주규정 요율	신고 불요
바몬트	claims made liability	-	-	-	claims made liability를 제외한 모든 종목	-	-
버지 니아	-	-	-	면제 종목 이외의 모든 종목	-	-	면제 종목
위싱턴	기업성종목 및 대형 기업성 계좌 이외의 모든 종목	-	-	-	대형 기업성 계좌 이외의 기업성 종목	-	대형 기업성 재물 및 상해계좌
웨스트 버지 니아	모든 종목	-	-	의료배상 이외의 기업성 종목	-	-	-
위스 콘신	-	-	-	-	육상운송 이외의 모든 종목	-	육상 운송
와이 오밍	비경쟁적 시장	-	-	-	-	-	비경쟁적 시장 이외의 모든 종목

자료: 보험개발원, 미국의 요율규제제도.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중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강민규, 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김석영, 김진익, 최원, 채원영, 이아름, 이해량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김경환,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 조재린, 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김석영, 김진억, 최원, 채원영, 이아름, 이해랑 2015.11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이상우, 최원 2013. 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강성호,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박선영,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윤성훈,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강민규, 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오승연, 이상우, 최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김세중,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조영현, 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조재린, 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 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 황진태, 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 김유미 2015.8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원, 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 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 정원석, 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 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 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 박춘원, 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 박선영, 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 김미화
2015.5

■ 연차보고서

- 제1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2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3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4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5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6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7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영문발간물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
-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조재린, 황진태, 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황인창, 이해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류건식, 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2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56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자약력

김 석 영

University of Arizona 수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kim@kiri.or.kr)

김 혜 란

건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hrkim@kiri.or.kr)

조사자료집 2015-7

일반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31-2 94320

979-11-85691-22-0 (세트)

정가 10,000원